第254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5年6月28日(火)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발의)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11.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5.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16.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17.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8.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歸屬農地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0. 文敎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폐지법률안
21. 農漁村高利債整理法 폐지법률안
22.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
2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農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25. 山林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2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27.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31.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
32. 水難救護法 일부개정법률안
3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
35.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36. 水路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8.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1.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2.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3.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4.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
4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
46.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47.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
48.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
52.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5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5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7.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58.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5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63.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
64. 請願法改正法律案
65.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
6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6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6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69.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
70.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
71.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3.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75.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
76.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7. 地方自治法 일부개정법률안

78. 政黨法 전부개정법률안
79. 政治資金에관한法律 전부개정법률안
80.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 일부개정법률안
8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82.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계속)
83. 憲法裁判所法中改正法律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계속)
84. 憲法裁判所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5.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86.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87.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계속)
88. 치료보호법안(계속)
89.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계속)
90. 치료감호법안(대안)
91. 特定犯罪加重處罰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92. 特定强力犯罪의處罰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93. 在外同胞의出入國과法的地位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계속)
94. 불법정치자금등국고환수특별법안(계속)
9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안(대안)
96. 刑法中改正法律案(계속)
97. 刑의失效等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계속)
98. 한국철도공사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사업 참여 관련 권력형 외압과 불법뒷거래 등의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99. 犯罪受益隱匿의規制및處罰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김정훈 의원 대표발의)(계속)
100.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10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不動産仲介業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03. 學術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04. 藥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審査된案件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 8
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발의)(천정배 의원 외 145인 발의) ····· 8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제종길・조정식・우원식・배일도・문학진・전병헌・이해봉・정봉주・구논회・노현송・최철국・최성 의원 발의) ····· 12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위원장 제출) ····· 13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재경・이윤성・권오을・이해봉・고진화・전여옥・고경화・박재완・김애실・맹형규・조경태・최재성・정병국・문학진・유승민・신중식・서혜석・엄호성・임태희・배일도・이인기・유정복・이계진・이주호 의원 발의) ····· 13
6.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16
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 16
8.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17

9.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교흥・김용갑・김태홍・김형주・문학진・박순자・배기선・안경률・오영식・유기홍・이광재・이광철・이미경・이영호・이원영・장경수・정봉주・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 17
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발의)(서갑원 의원 외 150인 발의) ····· 17
11.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 17
12.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1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1
14.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1
15.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 21
16.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조일현・우윤근・이시종・김우남・한광원・장복심・김춘진・김태홍・안택수・유선호・엄호성・김명주・김영덕・김광원・김낙성・박승환・한화갑・홍문표・강기갑・서재관・안병엽・양형일・이경재 의원 발의) ····· 29
17.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18.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19. 歸屬農地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20. 文敎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21. 農漁村高利債整理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22.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2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29
24. 農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 29
25. 山林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 29
2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박찬석・조일현・신중식・김교흥・김우남・신학용・문석호・천영세・노웅래・이은영・김낙성・강기갑・최용규・이영호・박홍수・김성곤・이원영・이인기・김영덕・김원웅・오시덕・강길부・안상수・박승환・이해봉・이경숙・이시종・이상민・안영근・허태열・오제세・황우여・장복심・정성호・김영춘・김태년・이근식・심재덕・김효석・김홍일・한화갑 의원 발의) ····· 29
27.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35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5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5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35
31.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 39
32. 水難救護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김교흥・김영덕・안병엽・김태홍・이정일・신중식・조일현・박찬석・노웅래・장복심・신학용・김형오・이영호・김명주・이호웅 의원 발의) ····· 39
3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 39
34.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신중식・한광원・이상배・김명주・배기선・제종길・이종걸・우윤근・박홍수・조일현・이철우・선병렬・김영덕・강기갑・이방호・우원식・오시덕・이정일・김낙성・노영민・유승희 의원

발의) ····· 39
35.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36. 水路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39
52.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 43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 45
38.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45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45
4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41.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42.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43.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44.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45
4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 47
46.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 ····· 47
47.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47
48.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 47
49.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47
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48
5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 48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 50
38.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 51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51
4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41.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42.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43.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44.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 51
4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 51
46.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 51
47.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51
48.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 51
49.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 51
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 51
5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 51
5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흥・강혜숙・박재완・조일현・엄호성・노웅래・노현송・이해봉・문학진・조배숙・안상수・이근식・정병국・최재천・이원영・이혜훈・제종길・김태년・신중식・김한길・유필우・서재관・우제창・윤호중 의원 발의) ····· 53
5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신중식・정봉주・조일현・김한길・서재관・유선호・이윤성・허태열・정성호・안상수・김태홍・이규택・정병국・황우여・김낙순・김재경・오제세・노현송・이근식 의원 발의) ····· 53
5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 53
57.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53
58.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53
5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 58
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구논회・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경・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 58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58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 ····· 58
63.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58
64. 請願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3
65.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 63

6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 63
6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 63
6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 63
69.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 63
70.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이원영・이용희・임종석・지병문・유기홍・구논회・장향숙・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 ····· 70
71.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봉균・김우남・김재경・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혁규・김희정・노현송・박계동・박세환・신중식・양형일・유정복・이계안・이호웅・최인기・최철국・허천 의원 발의) ····· 70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염동연・정봉주・최성・이상경・김재홍・정성호・민병두・박기춘・조성래・양형일・이영순・강기정・이상열・우원식・장복심・이인영・이근식・윤원호・지병문・노현송・김태홍・이원영・우윤근・안민석・최순영・김동철 의원 발의) ··· 70
73.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70
7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70
75.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70
76.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 70

(16시50분 개의)

○委員長 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조사관 이정화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전체회의는 오전 10시로 예정되었다가 소위원회 때문에 오후 2시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후 2시로 연기한 소위원회가 지금까지 진행됨으로써 전체회의가 많이 지연됐습니다.

원래 정기국회든 임시국회든 법안이 집중적으로, 특히 임시국회 기간 중에는 법안들이 마지막 일자에 몰려서 각 소관 상임위를 거쳐서 법사위에 회부되게 됩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에서는 법사위에 회부하기 이전에 충분히 협의, 심사를 거쳐서 법사위에도 심사할 기한을 주고 회부해야 되는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법사위에 회부할 때 5일이 지나기 전에 회부함으로써 5일이 경과하지 않음으로써 법사위가 심사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현재 들어온 것만 101건입니다.

일부에서는 어떻게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법안을 심사하느냐, 법사위가 너무 법안을 소홀히 다루고 있다, 심사가 소홀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5일의 기한을 지켜서 회부해 주든가, 아니면 5일이 지나지 않은 법안은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미뤄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그 법안이 시급하다 하면서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달라고 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하는 등의 사례는 정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회의에 현재 상정된 안건만 101건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심사해 보고 무리가 따르면 다음 회기로 미루든지, 다음 기일로 미루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해하시고, 중요한 핵심 부분에 대한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 법률 상호간의 관계에 관련된 체계・자구심사에 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꼭 불가피하지 않은 사항 또 정책적인 사안에 관한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회찬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노회찬 위원 예.

○委員長 崔鉛熙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짧게 좀 해 주세요.

○노회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단병호 의원 등 12명이 발의하고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4월 27일 법사위

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법안심사제2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2소위 회의를 참관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다수의 소위원회 위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고 계속, 제가 볼 때 합당한 이유 없이 제2소위에 계속 계류 중입니다.

저는 이것은 제2소위에서 더 이상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4월 27일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전체회의 일정에 올릴 수 있도록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재청이 있는지를 물어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봐야 알겠지만 7월 6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그전에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한 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은 제안된 것으로 하고 다른 안건을 처리하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회찬 위원 아니, 이것이 성립되는지는 재청이 있는지를 확인……

○委員長 崔鉛熙 그것은 그때 가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노회찬 위원 자동적으로 바로 처리해 주셔야지요. 그것이 제71조의 정신이지요.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조금 계세요. 위원장도 회의 진행하는 게 사정에 따라서 좀 요령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안건이 너무 많으니까 동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하고 바로 처리하지 않더라도 오늘 중으로 처리할 테니까 조금 기다려 주세요.

먼저 법률안 심사에 앞서서 한 가지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체계·자구심사를 위해서 소관 법률안들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일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치개혁특위 활동 시한이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정치개혁 입법인 동 법률안들이 임시회기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의사일정 제77항~제80항, 4개 법률안입니다—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해서 심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윤근 위원 심도 있는 논의를 몇 차례 했기 때문에 정치개혁특위, 저도 소위 위원입니다마는 시한도 있고 그간에 특위 여야 위원들이 아주 심도 깊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

○委員長 崔鉛熙 이것은 표결을 조금 미루겠습니다. 제77항부터 제80항은 조금 미루고 다른 것부터 하는데요. 그 사이에 양당 간사 간에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심상정·강기갑·권영길·노회찬·단병호·이영순·조승수·천영세·최순영·현애자 의원 발의)
2.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정배 의원 발의)(천정배 의원 외 145인 발의)

(16시58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천정배 의원 발의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1항 법률안에 대해서 발의자를 대표해서 노회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회찬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불법적인 고금리와 유사 수신행위 등 불법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국가가 몰수·추징하고 그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환부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법적인 고리 사채와 유사 수신행위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날로 가중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매우 취약합니다.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불법행위를 통해 얻는 수익에 비해 지나치게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실제 처벌은 더욱 경미한 실정입니다.

특히 처벌과 별도로 불법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은 경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 불법정치자금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몰수·추징이 이루어지고 불법적 고금리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신용카드 할인으로 얻은 수익도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고금리와 유사 수신행위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법 형평성 면에서 당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재산의 경우 처음부터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을 국가가 피해자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한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하도록 개정했습니다.

IMF 금융위기 이후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멀어진 서민들은 사채시장의 높은 고금리와 불법 추심행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이 이 같은 서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제안한 취지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우윤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우윤근 의원입니다.

부패청산을 위한 제도와 문화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은밀하고 지능화되어가는 부패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내부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흡하고 보상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부패방지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내부자 신고와 외부자 신고를 통틀어 부패신고 건수가 2002년 137건, 2003년 113건, 2004년 76건으로 얼마 되지 않고 그나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부패방지법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내부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과 불이익처분 방지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영역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안은 위 세 가지 방향에 기초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신고대상 행위를 확대했습니다.

현행법은 직접적 부패행위만을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법안은 부패행위 자체와 부패행위의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또한 강요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둘째, 잠정적 신분보장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인사상 불이익 조치의 잠정적 중단 또는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건 종결 시까지 징계를 보류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 이미 발생한 허가·계약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당해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신변보호 수단을 강화하였습니다.

위원회와 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조사기관 종사자 등은 조사 관련 서류 작성 시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을 준용해 생략할 수 있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는 신고

의 중요내용이 직무 또는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위원회에 신청하는 보상금의 범위에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에 지출되었거나 필요한 비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일곱째,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영역을 민간분야까지 확대·강화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입증책임 전환·비밀준수의무 면책제도 등을 일반 국민이 신고자인 경우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발의해 현재 법사위 1소위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일부 담고 있기 때문에 본 법안은 이것과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만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정부안과 함께 이번 6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전문위원은 아주 요약해서 법률상 문제점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대상범죄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업이나 유사 수신행위를 통하여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법 개정을 통하여 불법 추심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등을 은닉·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관련 불법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개정안의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한다 하더라도 제2조제2항 나목의 범죄로 나열하기보다는 별표의 중대범죄로 추가하는 것이 이 법의 체계와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에 있는 추징가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부분입니다.

안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은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고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추징가액 중 범죄피해자의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형사 관계 및 민사 관계를 구별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 속에서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고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민사적인 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재산 피해액을 구분·확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권한은 부여받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임의로 반환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 민사판결을 통하여 또는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하여 소촉법에 따른 배상명령을 신청을 통하여 피해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김대현 다음은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이 법에 대해서는 지난 2004년 11월 정부가 제출한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과 비교하여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패행위의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2조제3호 다목은 '가목과 나목에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와 강요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패행위의 하나로 추가·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부패행위 외에 부패행위의 강요·제의와 같은 간접적인 부패행위를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물론 신고자 보호범위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25조에 따라 일반국민은 간

접적인 부패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제32조에 따른 신분보장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개정안 제2조제3호 다목은 부패행위에 '강요 또는 제의'뿐만 아니라 '권고, 유인'의 행위까지 포함시킴으로써 위와 같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부패행위를 보다 폭넓게 근절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개정안이 부패행위의 강요, 제의, 권고, 유인하는 행위 외에 '강요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까지도 부패행위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강요 등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의 전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2조의2는 신분상 불이익처분이나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신고자가 원상회복되는 조치를 위원회, 법원에서 주장할 경우 불이익처분청 등에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입법취지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을 절차적 측면에서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불이익을 준 처분청 등에 입증책임을 부담시킬 경우 소의 남발 가능성이 있고 불성실 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오히려 행정기관 등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설명을 청취하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신변보호 실시기관의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변보호 수단의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3조의 제4·5항 및 안 제51조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먼저 안 제33조제5항의 신고자 신원공개금지 규정과 관련하여 부패범죄가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비추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51조의 처벌규정은 약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먼저 제22조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제51조(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안 제33조제5항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등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는 것은 입법 체계상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12쪽에서는 보는 바와 같이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적사항 등의 공개 등 금지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에 있어서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법률의 유사한 의무 또는 금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하여 볼 때 과중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12쪽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신고의무와 비밀준수의무의 충돌 시 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5조제3항은 이 법에 의하여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신설규정입니다.

부패신고를 활성화하려는 이와 같은 입법조치는 외부의 입법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등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4쪽, 다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첫째, 군사 등 중대한 국가비밀의 경우입니다.

군사·외교·대북관계의 중대한 국가비밀의 경우에도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둘째로는 공직유관단체 등 자체 규정상의 비밀준수의무 포함 여부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봐 주시고요.

끝으로 16쪽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비용 보상제도 도입에 관해서도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이 법안들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꼭 핵심적인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 부방위 측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법중개정법률안대로 법률안을 변경할 경우에 저는 무분별한 신고가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지 않은 이런 와중에서도 무분별한 허위신고 등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통계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패방지위원회사무처장 김성호 지금 현재 당장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실명으로 저희들이 신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실명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허위신고로 밝혀진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조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고, 또 의사일정 제2항 부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역시 좀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규 위원 제1항은 제1소위로 갑니까, 제2소위로 갑니까?

○委員長 崔鉛熙 이게 같은 법안이 제2소위에 계류 중에 있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제2항은 제1소위로 보내고요.

○최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의 없으시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사이에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으로부터 열린우리당 소속 천정배 의원이 사임하고 문병호 의원이 새로 보임되었다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신 문병호 위원님 크게 환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법사위에 오셔야 될 분이고요.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오셔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불만이신가요?

○문병호 위원 아닙니다.

○委員長 崔鉛熙 여러 위원님들한테 인사 좀 간단히 하시지요.

○문병호 위원 안녕하세요?

문병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사·보임돼서 4월에 한 번 왔었고 이번이 두 번째 사·보임돼서 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아마 원래 오셔야 될 분이 시간을 좀 지체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주 의원 대표발의)(김형주·제종길·조정식·우원식·배일도·문학진·전병헌·이해봉·정봉주·구논회·노현송·최철국·최성 의원 발의)

(17시15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형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주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김형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동법은 작년 정기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12월에 제정된 퇴직연금제 도입 입법으로서 금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는 4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온 퇴직금제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노사의 입장이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할 때 우리 모두 퇴직연금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는 퇴직연금사업자 즉 금융기관이 사용자로부터 퇴직연금의 관리 운영 업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해 주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은 퇴직연금제 성패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책무와 감독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수익률 및 수수료의 고시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일부 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입법적 미비사항을 조속히 보완할 필요성이 발생했습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표준계약서(약관 등)의 제정·변경 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고 금감위는 약관 등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변경·보완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매년 말 적립금의 운용실적 및 수수료 등을 고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그 밖에 부칙에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상의 퇴직금 체당금 상한액 인용조문 등을 바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되어 있는 법률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동 개정안의 이 같은 입법취지를 깊이 헤아려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김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입니다.

유인물 11쪽 안 제20조제6항에서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 사이의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관련된 약관이나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수익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함이 없는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그 퇴직연금계약의 종류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법 중에 "수익자"라는 용어의 사용례를 살펴보면 제16조제2항에서 근로자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익자"라는 용어 대신에 "근로자 또는 사용자"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 동조 제7항 중 "운용실적"의 법문표현도 이 법 제12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운용수익률"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어요.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할 때 자구수정, 용어수정 정도는 유인물로 대체하세요.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구수정 정도라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여성위원장 제출)

5.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대표발의)(안명옥·김재경·이윤성·권오을·이해봉·고진화·전여옥·고경화·박재완·김애실·맹형규·조경태·최재성·정병국·문학진·유승민·신중식·서혜석·엄호성·임태희·배일도·이인기·유정복·이계진·이주호 의원 발의)

(17시22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5항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여성위원

회를 대표해서 진수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위원장대리 진수희 존경하는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여성위원회 진수희 의원입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2005년 4월 7일 유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2005년 6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통합하여 제254회국회(임시회) 제2차 여성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채택한 법률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이며 가족 해체, 에이즈 등 질병을 확산시키는 등 개인·사회·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해악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로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는바,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이러한 전달체계 간의 긴밀한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하여 지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성매매 예방교육의 의무를 확대하고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성매매 예방교육을 초·중·고등학교의 장 외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시키도록 하고,

둘째, 성매매방지활동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조정 등을 위하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여성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안명옥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옥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법제사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입니다.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올바른 역사교육, 실질적인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 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및 범위 등에 대한 법적 근거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외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지는 더 없이 열악한 반면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자까지 포함시키고 주변 피해국들과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목적에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복지 증진을 추가하는 한편, 실제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생활안정의 지원내용으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하고,

둘째, 국외 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생활안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

셋째, 올바른 역사교육과 진상파악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넷째,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진상규명·배

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는 점 등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이에 대하여 여성위원회에서는 신중한 논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생활안정 지원은 제외하고 국적 회복 및 고국 방문 등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둘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사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현행과 같이 임의조항으로 하여 예산의 범위하에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이라는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국가의 의무 중 '배상'을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제안설명드린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안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발족이 언제부터이지요?

○여성가족부차관 신현택 6월 23일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발족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부차관 신현택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여성가족부장관께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위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십니다. 여성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차관이 나오신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기관 등의 의무적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규정의 헌법체계 적합성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인데요, 안 제4조제1항에서는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의무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등에까지 확대하고 있고 성매매 예방교육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행위의 개념이나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논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률적으로 금지된 범죄행위인 절도, 살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의 목적이나 효과 등에 있어서 합목적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매매 예방교육 대상을 국가기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국가기관 직원들에 있어 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많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고 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을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국가기관 등 직원들의 명예감정 손상 등 이들에 대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거나 다른 기관 및 단체 구성원들에 비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한다는 등 헌법상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행법상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하는 성매매 예방교육은 성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에 휩쓸리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그 입법목적이 명확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특정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경우가 많고 직장여성의 증가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남녀 간에 공·사적 접촉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성희롱관련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므로 성매매 예방교육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21쪽에 국가의 의무규정에서 유족 부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규정이나 정의규정, 그 외의 개별규정에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유족과 관련된 사항이 없으므로 그 유족 부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근 위원 소위에서 심도 있게 하지요.

○委員長 崔鉛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소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이 또 있습니까?

○여성위원장대리 진수희 없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돌아가시고요.

---

6.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7. 國民體育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제출)

(17시34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상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우상호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강성종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각각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거의 유사한 내용인 점을 감안하여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중요성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장애인 체육업무를 현행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되 장애 치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재활체육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특수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체육회'와는 별도로 '대한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안민석 의원 및 강성종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이 2건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장애인 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로의 이관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제고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시·도 사무인 등록체육시설업 중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을 시·군·구 사무인 신고체육시설업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골프장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하는 등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무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12쪽, 13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항의 위치를 조정하고 중복되는 조문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간에 서로 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예, 잘 끝났습니다.

○이원영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장애인 체육시설과 치료 업무에 관해서 관련부처를 문화관광부하고 보건복지부로 분할하고 있지요?

우상호 의원님, 장애인과 관련해서 체육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전하고 치료 일환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 잔류시키고, 법률의 집행과 관련해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령 얼마 전에 있었던 올림픽 경기 이후에 바로 이어진 장애인올림픽에서 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 소관 사항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체육인들이 좌절을 했었다는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마는, 장애인 체육업무를 일반적인 보건복지부의 일환으로 귀속시켰을 경우에 오히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로 드러나서 그동안 체육업무를 맡고 있던 문화관광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원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도 동의한 바가 있는 내용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래요? 전문성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광부장관님, 우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우상호 감사합니다.

---

8. **發電所周邊地域支援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9. **中小企業創業支援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김태년·김교흥·김용갑·김태홍·김형주·문학진·박순자·배기선·안경률·오영식·유기홍·이광재·이광철·이미경·이영호·이원영·장경수·정봉주·최규성·최재성·한병도 의원 발의)
10.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서갑원 의원 발의)(서갑원 의원 외 150인 발의)
11.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자원위원장 제출)

(17시40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제11항의 법률에 대해서는 산업자원위원회를 대표해서 한병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장대리 한병도 산업자원위원회 한병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류근찬 의원, 정병국 의원, 우윤근 의원, 이낙연 의원, 김기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에서 제출한 6건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등 4개의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 산정 기준을 당해 발전소의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여 지원금 산정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제고하였으며, 주변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도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자력발전소 또는 수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기금에 의한 지원금 외에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의 종류와 지원금의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지원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지원사업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투자수익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창업절차 대행 용역비 지원근거를 일반회계로 변경하였으며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시·군·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시 일괄의제 처리하는 인허가 사항을 확대하고 또한 신기술 창업 활성화를 위해 그간 분산된 각종 창업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창업진흥원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에 갈음하여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갑원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창업 등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력 향상 도모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의 수립,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및 실태조사의무, 장애인의 창업 촉진을 위해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 지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우대 지원과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 및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근거 마련, 장애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대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이 법의 적용범위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도 포함하도록 하였고, 장애인기업의 범위에 포함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비영리법인·단체이므로 장애인기업에서 제외하였으며, 장애인기업의 정의규정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 비율의 하한을 30%로 정하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규정은 기존 법령에 의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적용되고 있어 삭제하였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자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규정을 두었으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협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유사 입법례에 따라 삭제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시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안경률 의원과 서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고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주식회사의 자본금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국내 벤처캐피탈산업의 건전한 육성기반 조성을 통한 민간 주도의 벤처투자시장 정착을 도모하고자 종전의 다산벤처주식회사를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결성·운용 등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전담회사를 설립하고,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창업자로 확대하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하여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창업자에 대한 지원기반도 아울러 마련하는 것 등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4건의 법률안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에 지원금 이자의 회수와 관련하여 집행되지 않은 이자를 기금에 납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8쪽에 중소기업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의 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유인물 11·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8제1항은 전담회사의 업무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육성 등" 공익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영리성을 개념 요소로 하는 상법상 회사와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현행 제4조의8제3항은 상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전담회사에 대하여 이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상법은 보충적으로 준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함이 상당하므로 "전담회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의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유인물 8쪽의 개인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사유가 추가됨에 따른 경과조치규정 신설 부분은 유인물 주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과 관련해 검토과정에서 제19조를 새로 만든 것 같은데, 이 문안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데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장애인과 관련해 가지고는 장애경제인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협회로 하여금 일정 사업을, 공동구매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용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관 또는 단체" 이렇게 복수로 해 놨는데, 이 취지는 백번 이해가 가는데 문면이 불명확해서 잘못하면 쓸데없는

시비가 걸릴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 박기준 산업자원부의 의견을 참조해서……

○최용규 위원 산자위까지도 협의를 했을 텐데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안 제11조에 장애경제인협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요, 제13조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협회하고 종합센터를 묶어서 표현한……

○최용규 위원 두 단체를 상정하고 만든 법안입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예, 그렇습니다.

○최용규 위원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 장관님,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자에 대해서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 등록을 허용하는 것은, 혹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창업보육센터에 들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벤처기업과 동일하게 공장 등록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지 아니한 다른 업체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동종업종이 있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면 사실은 대학 구내에서도 창업을 할 수가 있고 공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창업보육센터의 경우는 주로 연구소나 대학의 안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샘플을 만들고 대량 생산은 못하지만 사실상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기업에 대해서 공장 등록을 해 줌으로 인해서 대량 생산 이전 단계까지는 허용을 해 주자는 취지로 확대해서 적용토록 문안을 바꾼 겁니다.

○김성조 위원 별다른 형평성 문제 제기는 없을 것으로 안다?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공장 등록 자체가 무슨 특혜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 수 있도록 이미 허용이 되어 있고 또 그분들이 거기서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등록을 해서, 물건을 만들다가 일정 기간 후 자신이 생기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와 가지고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은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체토론은 종결했는데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원 범위가 5㎞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일본은 피해지역이 10㎞까지로 되어 있지요? 우리나라도 발전소 주변에 사고가 날 경우 도피 내지 피신에 대해, 그렇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10㎞는 규정은 따로 돼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10㎞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해서 최소 10㎞를 벗어나야 된다고 돼 있지요? 담당국장이 누구예요?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적어도 10㎞를 벗어나야 된다고 돼 있지요?

○산업자원부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 법규상의 규정상으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왜 없어요?

○산업자원부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 저희들이 5㎞ 이내의, 지원에 관한……

○委員長 崔鉛熙 지원은 5㎞ 이내고 원전사고가 났을 때 10㎞를 벗어나야지요. 일본도 그렇잖아요.

○산업자원부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몇 ㎞, 거리 제한을 두고 벗어나는 규정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16대 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10㎞로 규정되었는데 그때 자동 폐기되었지요? 국장은 그때 있었나요?

○산업자원부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 그 당시에 저는 없었습니다마는……

○委員長 崔鉛熙 그래서 지금 5㎞를 벗어난 사람은 지원 대상에 안 들어갑니까?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현재 5㎞ 이내 읍·면·동이 지원 대상으로 돼 있는데요. 5㎞가 넘더라도 관할 시·군·구에 좀 줘야 되지 않느냐……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관할 시, 그 안에는 주지만 시·군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 이거지요?

○산업자원부장관 이희범 시·군이 다르면 안 됩니다.

○委員長 崔鉛熙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안, 의사일정 제11항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 國會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3.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4. 國會議員手當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5. 倫理特別委員會構成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국회개혁특별위원장 제출)

(17시58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제14항의 법률안과 제15항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대표해서 박재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 여러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4건에 대하여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대신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절차 및 국회 운영 일반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회의록을 속기 방식으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둘째, 의안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재적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의장은 그 의안을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의 입법예고안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회의 행정입법 검토 결과에 대해서 정부는 사후조치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 제출을 의무화하였고,

다섯째, 전원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전원위원회의 심사기간 및 발언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여섯째, 의원의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대정부관계, 국정감·조사 및 인사청문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의원 불체포특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처리시한을 명시하였고,

둘째, 신체 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증을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을 모든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원까지 확대하였고,

넷째,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에 대한 석방요구안의 발의 요건을 현행 20인 이상에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결산 심의제도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시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하였고,

둘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 등에 관한 운영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국회법에 두기로 하였으며,

셋째,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상당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관 위원회는 미리 예결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법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이에 맞추어 정리하고,

둘째, 공직 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시 첨부서류인 소득세 등 납부 실적을 최근 3년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늘리고 여기에 체납 실적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시행 중인 입법 지원 및 정책개발비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원의 윤리 심사와 징계에 관한 안건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9인 이내로 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국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년 동안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총 4건 중 먼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쪽 및 3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0조의2에 상임위원의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영리 목적 업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일 수 있어 과잉 제한이라는 지적과 함께 소관 직무 관련 영리업무 금지의 해석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의 논란, 예컨대 현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의원이 법사위에 소속된 경우 소송대리 등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나 타 상임위에 소속된 경우는 소송대리 등 변호사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문제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안 제81조제3항의 이해관계에 있는 안건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제한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결여가 우려되고 국회법 제37조의 소관주의 원칙에 배치되며 직접적인 이해관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유인물 17쪽입니다.

안 부칙 제3조에서는 제66조의2의 인사청문회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인사청문 대상에 국무위원은 물론 헌법재판관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의 경우는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개정안이 우리 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부칙 개정 부분은 삭제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3건의 타 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국회법 개정과 같이 국회법 부칙으로 개정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주호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를 금지하면, 지금 일부 의원들 중에서 법률 고문을 맡아 있다든지 혹은 수임해 있는 의원들이 있을 겁니다. 이 시행은 언제부터 하자는 취지로 돼 있는 겁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우선 이 조항이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3월 9일에 재계, 공공부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정치부문 등이

모두 참여해서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에 있는 정신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대로 받았다기보다는 그 투명사회협약에는 "국회의원은 재임 중 영리활동을 금지하도록 한다"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회개혁특위에서는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제한을 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과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현재 수임을 해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소송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둬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현재 예컨대 산업자원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이 기업체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든지 또는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의료법인의 고문변호사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경과규정이 필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호영 위원 그래서 취지가 국회의원을 직무에 전념하게 하는 취지인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직만 수행하기도 업무가 많으니까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취지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영리행위 전체를 금지하는 거라면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다 금지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것이 아니고 이해 충돌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거든요. 그 상임위에서 우월적 지위 내지는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거라면 그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잘 지적하셨고요. 이 법안의 일차적인 취지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이른바 이해관계 상충을 예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설학원을 운영하는 국회의원이 교육위원회에 배치되어 있을 경우에 한편으로는 교육부의 피감독기관의 장의 지위에 있고 한편으로는 교육부를 감독하는 그런 이중적 지위에 따르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아 보자 하는 것이 일차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직무 전념도를 높이자, 또는 충실도를 높여서 부업 등의 투잡스 상태를 해소해 보자, 사실상 지금 국회의원이 상근직으로 전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는 100% 담지를 못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부업을 일부 허용하면서 부업으로 인한 소득이 전체 연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는 등의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까지 두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회개혁특위에서도 그런 사안을 검토했는데 현재의 여건으로서는 시기상조가 되겠다 해서 한편으로는, 일차적인 취지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해관계 상충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단계적으로, 일부는 직무 전념도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마는 직무 전념도를 제고하는 문제는 좀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본인은 그런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소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부분에 관해서 속기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의무화를 했는데, 모든 소위원회를 대상으로 이것을 의무화하는 겁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렇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록을 작성하고 안 하고를 소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었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지금은 소위원회 의결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요지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회의록을 만들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핵심적인 사안들이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같은 경우는 그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밀실 논의다, 담합이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차제에 열린 국회, 투명한 국회의 구현을 위해서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용규 위원 저도 그런 취지에는 백번 동의하는데 특별히 밀실이다 담합이다 하는 의혹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경우가 있거든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위원회 의결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개혁특위에서 원칙적으로 속기록 작성을 하도록 하되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국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너무 포괄적이어서 그 자체도 좀 제한하자 하는 제 안이 나

와 있었는데 제 안은 갑론을박 끝에 유보되고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현행 규정과 같이 단서로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최용규 위원 특별한 이익충돌이 없다거나 사적인, 지역적인 이익과 관계없는 경우에는 굳이 속기록을 작성해 가지고 원활한 협의를 못 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상정된 안이라는 말씀이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공개적으로 논의하기 어려운 사항이라면 회의를 하기 전에 관련 국회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임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원칙적으로 소위원회든 상임위원회든 논의된 사항은 속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미풍양속 등과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가 있다면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다음에 저는 국회의원이 직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말에 백번 동의합니다.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는 특정 직역만이 문제되고 있는데 모든 직역이 자기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업무로부터 배제된 상태에서 국회의원 업무에 전념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원 초기부터 차라리 그런 원칙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규정을 뒀을 때 여러 가지 갈등이나 쉽게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국회가 과거부터 그런 부분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대강대강 뭉개면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충돌이 될 의원들, 특정 직역 포함해서 모든 직역의 과거 일을 하던 분들은 이익충돌이 될 만한 부분에 관한 과거의 일을 정리할 시간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경과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고요, 저희 국회개혁특위에도 율사 출신 의원 네 분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법사위원님도 두 분이 참여를 하셔서 그와 유사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과규정을 법사위에서 마련해 주신다면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용규 위원 그것은 법사위가 마련할 게 아니고요.

그다음으로 또 한쪽의 지적은 전문가 그룹 등을 국회의원 자격으로 쉽게 거론하면서 그 전문가들이 과거에 대한 정리를 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 업무로부터 전부 배제시키는 이 조항이 과연 국회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일부 반론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저는 영리활동을 지속해야 전문성이 유지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거 특정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얼마든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면서도 충분히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용규 위원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고리, 과거 업무로부터의 고리를 끊을 시간과 여유가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말이지요.

다 끊고 싶어 하지요, 사실 끊어야 합니다. 저도 거기에는 백번 동의하는데 그런 전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면 개인적으로 천차만별의 사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수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는 소송 송무의 경우는 경과규정을 충분히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외이사 등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경과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두게 되면 개정안의 취지를 너무 몰각하게 되기 때문에 상임위 등을 이동해서 해당 상임위에서의 이해상충 소지를 회피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용규 위원 본 위원도 국회의원이 어떤 업무도 겸임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맞는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법안 발의 시에, 지금 현재 국회제도 중에도 예산규모에 대한 정부 측과의 협의 절차가 있었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현재는 의원발의 법안의 경우에 국회예산정책처에 협조를 의뢰해서 비용추계서를 내도록 되어 있고 여당의 경우는 아마 당정협의를 거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회법에……

○최용규 위원 법률안에 소요예산 추계한 내역과 정부 측의 의견을 지금도 첨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특별히 정부 측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용규 위원 내가 혹시 염려하는 것은 거기에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소관 상임위 심의에서 협의를 거치도록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상당한 예산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에도 불구하고 또는 기금 등을 신설하는 중대한 법률안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혀 알지도 못한 채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국가재정 전반에 걸쳐서 세입세출의 균형 또는 중기재정 운용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채로 올라오기 때문에 재정적인 측면에 대한 심사를 충실히 해서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야당에서는 예산, 기금, 회계, 결산과 관련되는 제도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회에서는 여당안대로 기획예산처 소관 법률안과 상당한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의무화했다고 하더라도 협의 자체가, 예결위원회의 의견 자체가 특별히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회의 표결할 때 예결위원회 의견이 함께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알찬 법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예산결산위원회의 협의 절차가 자칫하면 의원들의 입법권한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그런 점은 없다고 봅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런 우려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반드시 협의를 해 줘야 되는 기한 같은 것도 지정을 했고요, 또 협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런 규정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면 상임위는 그 의견을 참조해서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의 의견이 기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상임위중심주의라는 국회운영의 대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협의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최용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 평소 존경하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의원이 좋은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는 전적으로 그 취지에 동의하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결위원의 경우에 이를테면 변호사가 예결위원회에 가면, 그것도 하나의 소관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그게 법무부, 법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결위원의 경우는 사실은 상임위원이 아니고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예결위원은 사실 모든 부처와 다 관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직무와 관련성 이것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만약 이 법안의 취지를 해석한다면 예결위에 소속하는 변호사 국회의원은 송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윤근 위원 이 조항에 저촉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윤근 위원 굉장히 많은 제약인데 예결위원도 못 하고…… 예결위원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윤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자면 국회법 제122조에 보면 의원은 소관 상임위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부 부처에 서면으로 질문할 수 있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모든 정부 각 부처에 직무의 연관성이 있고, 다만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는 것뿐인데 이 법의 취지를 감안하자면 결국 국

회의원은 아무 것도 못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법하고 연관하면……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렇게 정말 영리활동 등을 전면금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전면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고 또 너무나 급격한 변화이기 때문에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되는 영리활동으로 제한하자,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투명사회협약의 취지라든지 또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영리활동은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그런 강력한 요구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부작용 등을 감안해서 절충안으로 차선책을 선택한 것이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너무 포괄적인 규정이다, 제한을 어디까지 가할 것인가……

박재완 의원께서는 지금 특강을 못 나가시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좋은 분들이 특강을 나가서 가지고 좋은 지식을 전파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국가적으로 더 이익인가, 아니면 안 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어떻습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해서 제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특강을 한다는 것은, 특강 자체가 영리활동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영리활동이라는 것은 간헐적이고 부정기적인 것이냐, 아니면 정기적이고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냐 또 그런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거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상임위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면 특강 같은 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委員長 崔鉛熙 소관 상임위가 어디시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저는 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런데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하는데 이제 국회에 들어오면 보건복지위에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렇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의사라도……

○委員長 崔鉛熙 법조인은 법사위에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고……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중에서 지금 현재, 제가 특정인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병원을 개업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아예 병원을 개업하지 않고 진료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진료행위를 일체 하지 않으시는 분은 이 법의 개정안의 취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에 오셔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委員長 崔鉛熙 이렇게 봅시다.

병원이 재단법인일 경우에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의사인데 이사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은 이사장대로 수당을 받습니다. 그게 이 법에 따르면 가능합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분이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의사로서 진료행위를 안 하고……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의과대학 교수 출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은 지금 현재 교수를 휴직하고 진료행위도 하지 않고 일체 병원에 관여하지 않는……

○委員長 崔鉛熙 교수들은 당연히 나와야지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의사인 경우에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던 특정 법인의 이사장이든, 또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 국회에 들어 와서 사립학교의 모든 직책을 그만 두고 교육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사들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명의를 다 변경해 놓고 국회에 들어와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리행위는 안 하지만 보건복지위 또 교육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병원의 운영 상황이라든가 보건의료 상황에 관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보건복지부 또는 교육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 것을 차라리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사립학교 교수 출신이 그 대학을 떠났지만 언제고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그 교수님이 그 사립대학의 모든 상황을 의원직을 통해서 정부에 건의해서 많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 농민단체에 계신 분이 정말 농민단체에 오래 일을 하셔 가지고 정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그분이 계셔야 그 농민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오셨어요. 그 직을 갖고 의정활동에서 간접적으로 후원금을 지원한다,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굉장히 좋으신 지적인데……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것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 이 말이에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지적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취지와 같이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갖추신 분이 전문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셔야 그래도 정책이나 입법의 질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지적이 한편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민단체에서 일하시던 또는 대학에서 일하시던 분이 전직은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서는 관련 상임위와 직접 관련되는 영리활동만 안 하시면 그 정도는 우리가 용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병원을 자기가 운영하는데 명의를 가족 명의나 친척 명의로 바꿔 놓고 보건복지위에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입법기술적으로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실체가 그렇다면 그것은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강령 또 국회법을 실질적으로 어긴 것으로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을 뿐이지 실제로 명의 변경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까지 법을 통해서 막기는 입법기술상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좀더 실체를 보고 좀더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나 하는 의문을 가져요. 너무 포괄적이에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우리 국회개혁특위에 네 분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국회개혁특위에 참여했던 법사위 전문위원 등이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어떻게 좀더 개선된 문안으로 바꿀 수 없겠느냐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런 결론이 불만족스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저는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고도의 의술을 가지신 분이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정말 그분의 의술은 황 교수님처럼,—이제 이름도 못 쓰게 만들 정도로 국보적인 존재인데—황 교수님 같은 분이 국회에 들어왔다, 그런데 정말 이분이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수술을 했다, 그런데 이분이 돈을 안 받아요. 돈을 안 받지만 수술했다 하면 경쟁상대이거나 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못살게 굴 겁니다. 정말 고도의 의술을 가진 분이 치료하면 '당신 왜 의료행위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 그분은 하루아침에 사장되고 완전히 명망이 망가진다, 그래서 너무 추상적이다……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승조 위원 저도 함께 심사한 사람인데요.

다른 것보다 아까 우윤근 위원님께서 예결위도 못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는 게 주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의 어떤 변호업무하고 이것이 어떻게 연관돼서 안 된다고 해석을 하셨지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법원이나 검찰청 등의 예산을 다루시기 때문에 결국 그런, 일종의 우월적이라면 이상합니다마는 감독자 또 예산심의자의 입장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피감독기관에서 감안해서 검찰청이나 법원 등에서 당해 국회의원의 소송사건에 대해서 관대하다 할까요,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양승조 위원 사실상 영향력은 끼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직무 관련성 면에서 그것은 과도한 해석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부분으로 생각해도 직무 관련성은 없을 것 같아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법에서 모든 경우, 예결위원이 뭐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다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국회규칙으로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포괄적인 국회법의 규정을 받아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그와 같은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경우를 좀더 구체적으로 기술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승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물어보려다가……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직무관련 영리행위" 했는데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업무라고 했지요?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 소위 계속적으로 하는 일 그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영리행위, 구체적 행위를 못 하도록 하는 겁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기본적으로 기본취지는 첫 번째일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라기보다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윤근 위원 그러면 쉽게 풀어서 하자면 의사나 변호사가 개업을 계속해 놓고 영리의 구체적인 행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이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개업을 하고 영리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우윤근 위원 자문을 계속한다거나……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우윤근 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더 입법취지와 부합하도록, 혼란이 없도록 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이래야 저는 이 법 해석에서 혼란이 오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구체적 행위를 규제한다는 것 아닙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그렇게 하셔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든지 그렇게 하셔도……

○우윤근 위원 별 문제가 없겠습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예.

○우윤근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위에서 한 번…… 업무라고 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 의사나 변호사가 어차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입니다. 100% 비영리로 하는 건 대단히 상정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행위 하나하나를 못 하게 하는 게 입법의 목적이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저는 위원장으로서 소송대리행위는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 법사위 구성이 전문성 면에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을 것 같고, 그렇지 않아도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의원님들이 법사위를 기피합니다. 너도나도 법사위를 기피하는데 그러면 비법조인들이 전부 와 가지고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걱정이 앞서서 그러고요.

또 하나, 의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의 재적의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법사위를 예를 들게요.

변호사법을 개정합니다. 퇴직 후 몇 년간은 개업지를 제한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소송의 대리를 금한다 그러면 법조인은 법사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지요. 그것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당연히 나오실 질의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를 보시면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어느 한계까지인가를 소명해 주어야 됩니다.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만약 법 개정안에서 변호사법 같은 것이 법사위로 회부될 수 없다면……

현행 국회 규칙에 의해서도 변호사법이 법사위에 회부된다 하더라도 변호사인 위원님들은 회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법사위 구성으로 보아서 과반수가 안 되는 분들께서 변호사법을 심의하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법 개정안이 딱히 현행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개혁안이라기보다는 윤리실천규범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법으로 반영하면서 좀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에 관한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의 변호 범위라든가 제한에 대해 개정하는 데 법조인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어느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됩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현재로서는 전원위원회 같은 데서 심의할 수 있겠고 또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로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송무 이런 것을 담당하지 않는 변호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그런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委員長 崔鉛熙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이 내용의 해석상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신 있게 발의된 것입니까, 아니면 논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좀 있다고 판단하신 것입니까?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이 조항에 대해서는 법사위에 계신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크게 논란은 없었습니다. 일부 위원장님과 비슷한, 변호사법이 법사위로 못 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정도의……

○委員長 崔鉛熙 발의하신 법사위원이 그 토의 과정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겠네요.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委員長 崔鉛熙 법사위원회에 계시는 그분이 법조인이신가요? 법 해석상의 문제가……

○국회개혁특별위원장대리 박재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

○委員長 崔鉛熙 됐습니다. 대충 이 정도 토론하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법안이 많아서 충분한 토론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제약이 가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법률안과 1건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16.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신중식 의원 대표발의)(신중식・조일현・우윤근・이시종・김우남・한광원・장복심・김춘진・김태홍・안택수・유선호・엄호성・김명주・김영덕・김광원・김낙성・박승환・한화갑・홍문표・강기갑・서재관・안병엽・양형일・이경재 의원 발의)
17. **農産物品質管理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8. **農地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19. **歸屬農地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0. **文敎財團所有農地特別補償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1. **農漁村高利債整理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2. **農漁村高利債整理法中辨濟義務에관한特別措置法 폐지법률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3.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24. **農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25. **山林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26.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

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박찬석·조일현·신중식·김교흥·김우남·신학용·문석호·천영세·노웅래·이은영·김낙성·강기갑·최용규·이영호·박홍수·김성곤·이원영·이인기·김영덕·김원웅·오시덕·강길부·안상수·박승환·이해봉·이경숙·이시종·이상민·안영근·허태열·오제세·황우여·장복심·정성호·김영춘·김태년·이근식·심재덕·김효석·김홍일·한화갑 의원 발의)

(18시39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17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9항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농림수산위 법안 11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제22항, 이상 7건의 법률에 대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신중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신중식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존경하는 법사위원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병역 대체복무제도로서의 공익수의사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최근 가축방역과 축산물 위생 안전의 중요성, 그리고 가축방역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 등을 감안할 때 법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으며, 세부 운용 규정에 대해서는 다른 병역 대체복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윤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박홍수 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산물품질관리법중개정법률안, 김우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4건의 개정법률안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수농산물 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림부장관이 우수농산물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미곡종합처리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을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하여 관리기준에 맞게 농산물을 관리하도록 했으며 우수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산물에 대하여 우수농산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농산물을 생산·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후 당해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력추적관리를 하는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위표시 등 원산지표시 및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시정명령 등 처분과 처분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와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도입에 부수되는 사항들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들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대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 요건과 관련하

여 당초 정부안에서는 농지소유 요건을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농업회사법인을 대표하는 자는 농업인일 것을 요구하는 규정 등 일부 조항은 계속 존치하기로 수정 의결하고, 출자지분에 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하여 농업농촌기본법과의 형평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이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를 허용하되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ha까지만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셋째, 농업보호구역 안의 행위제한 방식을 현행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하여 농업환경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번째 중요한 사항은,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편하여 명칭을 현행 농지조성비에서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하고 부과기준을 현행 농지조성 원가기준에서 공시지가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재원활용의 범위도 농지의 조성 이외에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폐지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 소관법률 중 귀속농지특별조치법,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등 4건의 법률이 관계 사무의 종료 등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계속 존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이들 4건의 사문화 법률에 대해 각각의 폐지법률안을 성안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존경하는 여러 법사위원님들께서 저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신중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항 법률안도 신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셔야 되는데 같이 하시지요.

○신중식 의원 26항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육지와 도서 간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운임은 해운법에 따라 여객운송자가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지하철,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과 비교할 때 높은 운임으로 인하여 육지와 도서 간에 생활권 형성이 어렵고 교류 활동에 있어서도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 주민과 관광객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헤아려 주셔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제25항,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조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조일현 평소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크십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조일현 의원입니다.

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여성농어업인육성법중개정법률안을 병합 심리하였습니다.

두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한 골자는, 첫째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의 규정에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둘째 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한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시·도지사 소속하에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법안은 오늘 의사일정 31항으로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 때 통과된 법안 중에 이 세 자생단체의 선거를 금년 7월 1일부터 중앙선관위에 위탁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단체마다 선거기준에 대한 법안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것을 공직선거에 준해서 법을 통일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고 한 가지 이 법에 삽입한 내용 중에 특이한 것은 현행 협동조합법은 선거운동 목적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만 처벌할 뿐 선거운동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원에 대한 후보자의 기부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되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사회 통념에 비추어 허용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산림조합중앙회와 수협중앙회는 조합장 출마 피선거권 자격 중에 조합원이 된 지 2년의 기간이 지나면 가능하지만 농협은 비상임은 2년이나 상임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똑같이 2년으로 내용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기부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마찬가지로 기부를 받은 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 및 포상금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11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총 11건의 법률안 중 먼저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부분과 공익수의사의 신분 박탈에 관한 청문절차 규정 신설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안 제5조제2항은 병무청장이 공익수의사를 편입하는 경우 편입 명단을 농림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하고, 안 제9조는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이 법률안의 각 조항은 병역법에 따라 수의사가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전제로 효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방위원회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대상 농산물 규정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기준 미준수 행위 등을 과태료 처분으로 변경함이 상당한 것으로 보았는데 안 제36조제2호에서 농산물 이력추적등록을 한 후에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또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이력추적관리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 안 제36조제1호에서 농산물 이력추적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와 같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각 행위는 단순한 행정상의 의무 위반 사항이므로 농산물 이력추적등록 자체를 하지 않은 행위와 처벌 정도를 달리함이 상당하다고 보므로 과태료 처분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16쪽에 농지 처분의무 소멸 규정을 보완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폐지법률안,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폐지법률안,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11쪽의 경미한 기본계획의 변경 부분과 유인물 13쪽의 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조사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33·34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무상의 행위로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에 기부행위로 보도록 명확히 규정을 하는 것인데요, 안 제50조의2(기부행위의 제한) 규정 제2항제2호 나목에서 의례적 행위로서 친족 외의 자의 관혼상제의 경우 축의 부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는 의례적 행위로 보되, 다만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의례적 행위가 아닌 기부행위로 보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무상 행위에서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것이 당초 입법취지임에도 위 규정 방식에 의하면 직무상 행위에서는 화환 화분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법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취지이므로 유인물 주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11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을 여러 건을 상정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대체토론을 할 때 어느 법안에 대해서 질의하시는지 지적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신중식 의원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을 봤는데요, 관계사무가 종료됐다고 제안 경위에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귀속농지에 관한 모든 업무가 다 끝났다는 얘기입니까?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신중식 귀속농지에 관한 것은 제가 최용규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것보다는 농림부 정책기획실장이 왔기 때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러시지요. 누구든 내용을 아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委員長 崔鉛熙 나오시는 분 누구세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농정국장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장태평 국장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답변하시지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귀속농지는 모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런데 귀속농지라는 것이 해방 이후 주로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중에 농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예.

○최용규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국내에 10만 건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귀속농지는 모두 정리가 되어 있고요, 명의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귀속농지의 정의가 뭡니까? 일본인들이 1948년 9월 7일 당시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국유로 전부 만들고 그 농지를 귀속농지로 해서 분배했던 것 아닙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예.

○최용규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인 명의로 있던 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지금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의 국유재산 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10만 건 가까운 토지가 지금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농지가 있다면 아직 문제가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그것은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모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국가가 농지를, 일본인 명의의 귀속재산 중 농지를 국가가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을 그 당시에 농민들한테 분배했던 것 아닙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제가 그 사항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혹여 지금 귀속농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이 법을 섣불리 폐지해 놓고, 예

를 들어 민통선 인접지역의 농지 중에 이런 땅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예, 없습니다.

○최용규 위원 일본인 명의의 토지가 10만 건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국장께서 혹시 아십니까? 그 중에 농지가 있다면 그것은 국유지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예.

○최용규 위원 그런데 그런 귀속재산 중에 귀속농지를 국가가 소유해도 괜찮은 겁니까?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귀속은 국유로 됩니다.

○최용규 위원 국유조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도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농지개혁법도 폐지가 됐는데 귀속농지특별조치법에 해당되는 토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때 다시 법을 제정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명의가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국유로 완전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용규 위원 국장님, 안 그렇다니까요.

○委員長 崔鉛熙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소위원회로 넘겨서, 그때까지 농림부에서 자료를 준비하시지요. 지금 남아 있는 토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이 기회에 한번 평가를 해 보시고요.

○농림부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 이원영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농지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법인 중에서도 출자액의 2분의 1의 돈을 낸 농업인이 출자액을 4분의 1로……

○농림부장관 박홍수 2분의 1로……

○이원영 위원 그 조항이, 현행이 2분의 1이고 그것을 완화시키는 것 아닙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예, 좀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원영 위원 그리고 또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사용대해 준 경우에는 자기가 이용하지 않는 농지라도 계속 소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농지법이 그 취지는 뭡니까? 경자유전의 원칙이 조금 훼손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농지 소유의 형태가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이러한 형태들이 새롭게 정립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의 새로운 자본들이 농촌에 유입될 수 있는 길을 터 주자 하는 것이고 또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영 위원 경자유전 그 부분이 지금 헌법상 조항에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촌의 상황이 변화되어서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율했다는 말씀이지요?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렇습니다. 농지 소유와 이용과 보전의 세 가지 기능은 현재 이것이 자로 자르듯이 완벽하게 그렇게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지의 소유에 관한 여러 가지 형태가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개정시켜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원영 위원 일부에서는 이것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투기 염려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막을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그래서 이번 농지법 개정안에 소유에 관한 것은 아주 철저하게 규제를 했습니다. 도시인들이 농지를 소유해도 그것은 농업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전환되지는 않도록 장치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원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문교재단소유농지특별보상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2항 농어촌고리채정리법중변제의무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의사일정 제26항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농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지법 일

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24항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5항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다음, 의사일정 제16항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병역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등과 병합심사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고, 그다음 의사일정 제19항 귀속농지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혹시 관련된 내용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소위원회에서 답변하도록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7. 農漁村整備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2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0.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19시10분)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27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제30항,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박홍수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농어촌민박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로부터 지정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하거나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의 준공 전까지 피해 예측 규모, 주민대피계획 등을 담은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청 소관 3개 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61년 제정된 규제 위주의 현행 산림법으로는 산림의 자원화 및 임업의 산업화 추진에 미흡하여 기능별 법체계로 전환하여 분법을 추진한 후 산림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는 산림지속성지수를 개발·공표하고 국·공유림을 소유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을 목재 생산, 수원 함양, 재해 방지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산림사업법인이 산림사업을 부실시공한 때 등의 경우에는 영업정지명령 또는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불 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산림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위해 요인의 제거 및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목표와 추진 방법 등이 포함된 국유림경영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유림 중 조림 성공지, 경제림 육성단지 등

을 시범림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연접한 다른 중앙관서의 장 소관의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경영 대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국유림과 함께 경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건전한 여가활동, 체험 및 휴식 등을 위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어 급증하고 있는 산림문화·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문화·휴양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숲 해설가·등산 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인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자연휴양림에 휴양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 전문가 등으로부터 휴양시설의 적합성 및 경관 등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산림청장은 10년마다 전국의 등산로를 조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등산로를 조성하고 보전·관리·정비하도록 하며,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을 위하여 등산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 3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의 입법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박 장관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는데 자구수정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도록 하고 법적인 문제만 언급하세요.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총 4건의 법률안 중 먼저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제8호의2는 농어촌 민박사업을 하는데 이용하는 주택을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건축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법률에 근거가 없고 단지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이라는 표현은 건축법의 체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건축법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문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15쪽,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자를 사업의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36쪽, 137쪽이 되겠습니다.

법정형 불균형 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 산림 절도의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림 방화는 산림 절도의 경우보다 불법의 정도가 통상 큼에도 벌금 액수가 오히려 낮으므로 벌금액을 2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74조의 경우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등의 경우 병과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병과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신체형뿐만 아니라 그 영리행위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하여도 제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호의 행위는 이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특히 제6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병과형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또 제73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안림 등의 절취 등의 경우에도 병과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병과형 처벌 근거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물 129~132쪽, 143쪽, 144쪽의 부칙 규정의 보완 부분을 말씀드리면, 안 제58조~제63조

에서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녹색자금의 설치·재원조달 방법 및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녹색자금은 기존에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용·관리하던 것이었으나 그 운용 주체를 산림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가재정의 통제가 가능한 기금의 형식으로 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획예산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금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다만 기금으로의 전환에 따른 준비 등을 위하여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안 부칙 제7조 내용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55쪽 기능인영림단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수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유인물 40·41쪽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증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예시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전문위원, 잠깐 거기 서 있어요. 좀 확정할 게 있어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이것도 소위원회에 넘겨서 법정형을 조정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자기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 산림 절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崔鉛熙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이 자기 소유 산림 방화의 경우 산림 절도의 경우와 같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리면 되겠다, 그 정도면 적절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 제74조 병과형인데, 설명을 너무 간략하게 하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손상하거나 고사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병과형으로 처벌, 이게 고의범인가 과실범인가?

○전문위원 박기준 고의범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가로수에다 무슨 기름을 부어 가지고 고사시킨다 이런 거예요?

이것은 병과형을 안 해도 된다 이것입니까?

○전문위원 박기준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어떻습니까? 법정형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부칙에 대해서, 이것도 기금관리기본법과 관계되나요?

○전문위원 박기준 이것은 벌칙 문제가 아니고 녹색자금을 기금 형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율을 적용받지 않는 형태의 자금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형식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의견이었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기획예산처 의견인데 기금관리기본법과 직접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경과규정을 뒀어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경과규정을 뒀습니다. 기금으로 전환을 하는 데 따른 준비 등을 고려해서……

○委員長 崔鉛熙 그럼 해결이 됐네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崔鉛熙 이것도 소위원회에 넘겨서 하려면 시간 걸리고 복잡해서 아까 확정을 지은 것으로 하고 나머지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용규 위원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예, 최용규 위원 질의하세요.

○최용규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8호의2 농어촌민박사업 규정을 전문위원이 적절히 손을 본 것 같은데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콘도미니엄의 개념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의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농림부장관 박홍수 용어가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

○최용규 위원 다가구주택과 방이 있고 화장실이 달려 있고 샤워실이 달려 있는 방이 10개 정도 있는 3층집은 뭡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실제 어촌지역에서 군 측에서 장려해 가지고 집을 지었는데 민박사업 범주에 들지 못한다고 그중 일부만 사용하라는 요청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촌에서 어려운 형편에 민박사업을 하려고 그

것을 기껏 지어놓았는데 그 범주에 들어가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있는지……

○농림부장관 박홍수 현재 이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숙박업 형태의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민박이라는 이름으로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집을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들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용규 위원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하는데요, 진정으로 어민이 민박사업을 부업으로 하기 위해서, 일정 실 규모 이상의 콘도미니엄인지 저는……

○농림부장관 박홍수 어쨌든 그런 주택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러면 방 실 규모가 따로 있습니까?

○농림부농촌정책국장 서병훈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규정은 면적 기준으로 되어 있지 않고 7실 이하의 방인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으로 규정을 해서 숙박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규모에 관계없이 7실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용규 위원 그 규정이 법에 있습니까?

○농림부농촌정책국장 서병훈 농어촌정비법에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실이라는 개념이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콘도 같은 데 가보면 바깥에 문이 하나 있고 안에 방이 7~8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운데는 공동거실로 쓰고요. 그러면 이것을 7실로 봐야 되느냐 바깥에 문이 하나 있으니까 1실로 봐야 되느냐 이런 적용하는 데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요,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7실이라는 규정을 빼가지고 앞으로 면적 기준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면적 기준을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농어촌지역에 있는 주택을 활용해서 숙박행위를 하는 것을 민박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이런 것이 전부 들어와 가지고 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운영은 숙박업을 하고요, 그런데 단속을 나가면 '우리는 숙박업 아닙니다. 농어촌 민박입니다' 이래 가지고 평창, 제주도, 안면도 이런 데가 전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합니다.

○최용규 위원 체계·자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서 미안한데 어촌, 어민이 실질적으로 민박을 하기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서 규모가 큰 콘도미니엄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의 방 실이 여러 개 있는 건물을 지었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농림부농촌정책국장 서병훈 그래서 경과규정이 현재 들어갑니다.

○최용규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우리 농림부에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방 실 수로 정해 놓았어요, 7실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을 짓다 보니까 4개, 4개 이렇게 8개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7개 이하가 민박이니까 8개는 위반이 되잖아요, 검찰청에서 일제 단속을 하니까 한 방은 주인이 쓰는 방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농림부뿐만 아니고 모든 행정이 구체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미국 입법처럼 해 줘야 돼요.

이렇게 7개, 평수가 차라리 확실할지 모르겠어요. 평수 작은 방을 몇 개 만들더라도 오히려 그게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아줌마들이 부동산 대책 세우는 전문가들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정부에서 법 만들어 오면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법을 어떻게 위반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까 하는데 이제는 법에서 완전히 명시적으로 못을 박아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집행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림부농촌정책국장 서병훈 앞으로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유의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많이 만들라는 얘기예요.

○농림부농촌정책국장 서병훈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농어촌정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8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9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1. 水産業協同組合法 일부개정법률안(조일현 의원 대표발의)(조일현·김광원·엄호성·신중식·한광원·김영덕·김우남·이정일·이영호·이시종·김재경·안병엽·서재관·양형일·노현송·김명주·김재원 의원 발의)

32. 水難救護法 일부개정법률안(한광원 의원 대표발의)(한광원·김교흥·김영덕·안병엽·김태홍·이정일·신중식·조일현·박찬석·노웅래·장복심·신학용·김형오·이영호·김명주·이호웅 의원 발의)

33.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해양수산위원장 제출)

34. 漁業協定체결에따른漁業人등의지원및水産業發展特別法中改正法律案(이영호 의원 대표발의)(이영호·신중식·한광원·이상배·김명주·배기선·제종길·이종걸·우윤근·박홍수·조일현·이철우·선병렬·김영덕·강기갑·이방호·우원식·오시덕·이정일·김낙성·노영민·유승희 의원 발의)

35.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정부 제출)

36. 水路業務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19시30분)

○委員長 崔鉛熙 그다음, 의사일정 제3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4항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5항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조일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현 의원 조일현 의원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법률안은 앞서 당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신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그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서 공명선거를 위한 개정법률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아주 요점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셨습니다.

고맙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32항~제34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대표해서 신중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장대리 신중식 신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설명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32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수난구호법은 바다와 하천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기관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법률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령의 제명을 수난구호법에서 수상재난구호법으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쉽게 하고 재난과 관련된 법률의 명칭을 일원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는 선박·항공기 조난사고는 물론 외국의 수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이나 선박·항공기 등의 사고에 대해서도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한 국제수색구조협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입니다.

또한 조난사고 발생 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구조활동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중앙구조본부와 광역구조본부 그리고 지역구조본부의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령에는 근거하지 아니한 채 해양경

찰청 고시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와 관련한 규정을 금번 수난구호법 개정에 반영토록 하여 국민에게 법령에 근거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법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허위조난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수난구호법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제33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이상배 의원과 안병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일부내용을 저희 전체 상임위에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째, 선박운용회사의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그 허가요건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둘째, 선박운용회사가 선박투자회사에 대하여 법령이나 정관 그리고 업무위탁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셋째, 선박투자회사를 활용하여 관공선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 근거규정을 독립조항으로 신설하였으며,

넷째, 선박운용회사 등 특별관계자의 주식소유제한을 100분의 25로 완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육상골재의 부족으로 육상의 건물, 아파트, 도로는 물론이고 항만건설 등을 위해서는 바다에서의 골재채취가 불가피하며, 향후 그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바다는 골재나 광물채취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양자원은 우리의 식량인 수산자원이며 바다골재채취로 인해 가장 타격을 받는 것 또한 수산자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훼손은 직접적으로 바다생태계의 교란과 파괴를 가져오며 이는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져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정적인 수산물의 수급을 위태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의 현실은 골재채취 등으로 훼손된 해양환경이나 바다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바다 골재채취를 둘러싼 제도상의 모순점을 조금이나마 시정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에서 골재채취 행위에 부과되고 있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교통시설특별회계의 항만계정의 세입에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이관함으로써 골재 채취로 훼손된 해양생태계 복원에 일부나마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및 제3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할 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형 낚시어선의 승객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고 착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의 승선정원과 승객 준수사항 등을 게시하도록 하고 출항제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로업무의 목적과 활동영역을 확대 재정립하여 해양의 보전·이용과 개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바다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함으로써 해양주권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로업무의 수행목적을 종전의 해상교통안전 및 해양개발에의 이용에서 해양의 보전·이용·개발 및 해양관할권의 확보로까지 확대하고, 둘째 해양에서의 공사로 인한 해저지형, 수심 등의 변경정보를 신속히 파악하여 항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해상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자에 대하여도 수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들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오거돈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여섯 건의 법률안 중 먼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농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 개정안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유인물 28쪽의 정의규정이 없거나 약칭되지 않은 용어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쪽 개정안의 허가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현행법 규정을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구체적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쪽에 선박운용회사에 대한 허가 및 업무의 세부기준을 현행과 같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부분도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과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미한 자구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전문위원, 잠깐만!

수난구호법의 용어를 수상재난구호법으로 고치지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崔鉛熙 그런데 이게 수상이면 물위만 얘기하지요? 수중인 경우는 어때요? 수중사고나…… 수상일 경우에 수중은 제외해요? 수상재난구호법이 수중은 포함이 안 되나?

○전문위원 박기준 수중도 포함된다고 봐야……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수상재난구호법이 용어가 맞지 않잖아, 어때요?

해경청장, 답변해 보세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통상 수상에서 발생한 사고가 수중으로 가라앉거나 이렇게 사고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상정해 가지고 수색구조라든지 구난에 있어서 수중에서 건져 올리는 경우까지를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육상재난과 보통 구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수상이라는 개념을 썼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런데 지금은 선박이 낚시어선인 경우에 수상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앞으로 좀더 발전해서 수중에서 모든 것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법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여기에서 말하는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수상에서 발생했던 사고가 가라앉았을 경우에 구조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규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게 해경에서 작성한 법안입

니까?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해수부가 아니고?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예.

○委員長 崔鉛熙 조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양승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양승조 위원 제가 막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해상에서 침몰하는 경우만 아니라 잠수정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충분히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수상재난구호법이 오히려 개념상 한정된 개념이라 수난구호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그래서 이것을 수상에서 시작된 재난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쌀의 협약이라든가 IMO 같은 국제해사기구가 모두 법률 제명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수상 또는 수중에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개념이나 내용 적용은 똑 같이 되기 때문에 이 법률 제명이 수상이라고 해서 수중 사고에 대한 구조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양승조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바다 속에서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 것까지 포괄해서 법률로 내려면 수난구호법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것이지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수색이나 구조에 있어서 사람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만 있으면 그것이 수상이든 수중이든 똑 같이 개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이것을 '수난구호법'이라는 법률명이 좋은 것 같은데 구태여 범위를 한정하는 '수상재난구호'로 고치느냐 하는 것이지요.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상"이라는 것도 개념 정의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그런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수용하겠습니다. 그냥 '수난구호법'으로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명칭은 내가 보니까 '수상재난구호'가 아니고 '수난구호'라고 붙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지요.

전문위원, 이것은 '수난구호'로 용어 정리를 하세요.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해수부장관은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예, 이의 없습니다.

○양승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난구호 정의 규정에서 이왕 고치시려면 "해상 또는 하천"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해 또는 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그것도 수용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것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해상, 수중 또는 하천'이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원래 있던 규정이니까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원래 있던 규정을 또 손대면 더 어려워지니까 그냥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양승조 위원, 양해하시겠어요?

○양승조 위원 예.

○委員長 崔鉛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35항 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수로업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중식 의원님, 조일현 의원님, 해수부장관님, 해경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국방부 법안이 1건인데 양해를 하시지요? 양해 안 하시면 원래대로 하고요.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상민 아닙니다.

○委員長 崔鉛熙 위원님들 양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52.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방위원장 제출)

(19시50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안영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세요.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제안설명 이전에 양해해 주신 김영일 의원님과 이상민 의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방위원회 안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대안은 김기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과 문병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동일 제명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통합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본 특별법에 의해 조사대상이 되는 군의문사를 군인으로 복무하는 중 사망한 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또는 사건 중에서 19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발생한 사고 또는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사고 또는 사건으로 하되, 과거사법에 의하여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군의문사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되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사무국 직원은 별정직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신분의 모호성을 해소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가공무원법의 결격사유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무원칙한 직원 임용 소지를 방지하였습니다

넷째, 사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군의문사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하되, 진정이 없는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회의 조사방법은 출석 요구, 진술청취 및 진술서 제출 요구, 감정 의뢰,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실지조사, 통신사실의 확인 등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1년으로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조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조사 및 이의신청 절차 중에 위원회의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조사과정에서 피진정인 등에 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조사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위원회는 조사 후 기각, 진상규명 불능 결정, 진상규명 결정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각하, 조사개시 결정과 기각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위원회가 이의신청의 절차 종료 후 진정의 내용이 사실로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예회복 및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그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째,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조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감형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으며, 유죄로 인정된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특별사면과 복권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화해라는 입법취지를 최대한 살리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상임위원의 정수와 자문기관의 설치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의 정수를 2인으로 하고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방위원회에서 제안드린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입니다.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 두 가지 사안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 안 제5조제1항에서 위원회의 정원은 7인이고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 그 밖에 5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이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이는 안 동조 제3항에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각각 임명"한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의 자격에 관한 동조 제2항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동조 제4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은 위원의 하나로서 이를 규율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 동조 제1항의 문언만을 살펴보면 위원장 1인은 7인의 위원 외에 별도로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법문표현이 되어 있으므로 입법 취지에 맞추어 위원회의 정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 안 제19조제8항은 위원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항 중에 "관계기관"이라는 법문은 명확하지 아니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범죄수사 목적 또는 국가안보 목적에 한정하여 인정되고 있는 것인데 이 법에 의한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있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 조사방법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동법 제22조제15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선례로 보아 최근(2005년 5월)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을 일부 개정한 내용을 반영하여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군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인정되는 한시법이라는 점과 통신사실 확인자료가 보존되는 기간이 법률안의 대상기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전문위원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 안영근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군의문사 사건의 경우에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진정이 있으면 조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행시기를 이 법 시행 전일까지 발생한 사건에 국한하지요?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93년 2월 25일……

○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93년 2월 25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라고 했는데 시기를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로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그것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이 발족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이나 거기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일부러 군의문사는 93년 2월 25일 이후로 시기를 제한하고 그 이전의 것이라고 할지라도 유족이나 관계자의 진정이 있을 경우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이원영 위원 이 법 시행일 전에 있었던 의문사건은 해결하되 그 이후에는 일반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까?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예.

○이원영 위원 이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지요?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예.

○이원영 위원 왜 직권조사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까?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혹시 있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원영 위원 결정해서 나중에 명예회복과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국방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하면 법에 명예회복과 보상 근거가 있습니까?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의문사가 대부분 자살로 규명되는데 그것이 타살로 규명되거나 혹시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규명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우와 보상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명예회복 및 보상의 법적 근거가 있나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그런 경우 순직이 된다면 순직 사유에 따른 보상규정과 액수가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그 부분은 군의문사위에서 인정할 경우 거기에 따르는 특별한 조각 근거가 아니라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되겠지요.

○국방부장관 윤광웅 일반적인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원영 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영근 의원께서 과거사법하고 군의문사법의 차이가 무엇인지 중요한 핵심 부분만 간단히 여기서 설명해 주시지요.

○국방위원장대리 안영근 초기에는 군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사항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의문사당했다고 생각하는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이 일부는 과거사법에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고 일부는 군의문사를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조사의 심도를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의문사법을 따로 분리해서 국방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현재 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군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38.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4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1.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2.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3.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44.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20시04분)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37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8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금 타 상위 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타 상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만 듣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4시간 가까이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상황이지만 불편을 드릴까봐 상정해서 재경위 두 분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과 제3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률 의원 나오셔

서 제안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의사일정 제39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률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지요.

○김종률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위원회의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입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해서 납세자가 잘못된 세금 부과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보다 대개 장기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 3년, 프랑스 3년, 독일 4년, 영국은 6년입니다.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더라도 국세행정에 큰 무리는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3년으로 연장하는 경우에 납세자들의 경정청구 건수가 현재보다 40~50% 정도 증가하여 직원 1인당 연간 처리 건수가 40건에서 58건으로 18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월 1.5건 증가에 그쳐 현재의 행정력으로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권과 마찬가지로 현재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5년으로 되어 있음에 비해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 되어 있어 납세자와 과세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환율 등으로 인해 현재 어려움에 처해 있는 수출기업들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상민 당초에는 제39항, 제45항, 제46항~제48항까지 제가 제안설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46항~제48항은 정무위 소속 이상경 의원님께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39항과 제45항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예.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상민 제3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경위 대전 유성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입니다.

저는 재정경제위원회가 제안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으로 코스닥시장에 신규 상장된 벤처기업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사업손실준비금제도를 도입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소득공제를 도입하며, 제3시장에서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 비과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BTL 사업 지원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BTL 사업 방식에 의하여 국가 등에 공급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기한을 현행 2005년 6월 30일에서 2007년 12월 31일로 2년 6개월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추가하고, 재활용 폐자원과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율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며, 투자회사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는 등 일부 입법 미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

원회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상민 제45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직……

○委員長 崔鉛熙 둘로 나눴기 때문에 신탁업법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자리에 일단 앉아 계시지요.

의사일정 제40항～제44항까지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총리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교통세법 교육세법 등 5개 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세법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월부터 개정 시행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통합하여 평가한 주택가격이 4월 말에 공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통합 평가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소비세법과 교통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유승용차 보급 확대 등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의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70%에서 85%가 되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또는 특별소비세를 2005년 7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LPG부탄의 소비자 가격이 휘발유 가격 대비 현행 53%에서 50%가 되도록 2005년 7월부터 LPG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2005년 말 종료 예정인 등유 중유 등 유류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적용시한을 폐지하려 하였으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2010년까지 5년간 적용시한을 연장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제출한 5개 법률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만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조금 미루겠습니다.

타 상위 의원님들이 와서 오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저녁을 안 먹었다 하더라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상위에서 오래 대기시킨다고 법사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오늘 한 법안들이 타 상임위에서 5일이 되지 않은 기한에 와서 심사를 해달라는 게 태반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양해하시고 조금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듣도록 할 테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선 상정을 하고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4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
46.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
47.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48.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
49.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5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

(20시16분)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45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6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5항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이상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대전 유성구 출신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은 신탁업을 겸영하고자 하는 증권 및 보험회사의 경우도 은행과 동일하게 신탁회사의 상호 사용, 고유자금의 운용 제한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안에 대한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 결과, 준비금의 적립 책임을 가중하고 있는 법 제21조는 증권거래법 및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감안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수정하고, 신탁회사의 상호 사용, 고유자금의 운용 제한 등의 규정은 개정안대로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탁업 인가 시에 신탁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신용대출, 어음할인 등 대출 업무의 취급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으므로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금융기관의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대출 업무의 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제51항,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이상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경 의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우리당 정무위원회 소속 이상경 의원입니다.

오늘, 여야 의원 23인이 서명해 주신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동 법안의 공동발의에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법안은 3개 법안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이 법안에 대해 각각 별도로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이 3개 개정안이 동일한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기에 한꺼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법안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의 경우 대주주 변경 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그 적격성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의 건전성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적합한 자본의 시장 진입을 강화하는 등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일한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회사, 선물회사의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시 사후 보고 대상이며 자산운용회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승인

제도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경우 공히 주식 취득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 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는지 사전 승인함으로써 고객의 신뢰와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적합한 자본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는 등 금융산업 진입 관련 자격요건 심사를 강화하여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 개정법률안에서는 증권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도 주식 취득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충분한 출자 능력을 갖추어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에 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처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의결권 행사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명령을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제4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이계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장대리 이계안 서울 동작을 출신 열린우리당 소속 재정경제위원회 이계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업무를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 전략의 달성과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제조업이 그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정부는 경제 성장 동력을 IT분야 등으로 전환했지만 업종의 특성상 필요한 부품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조달하기 때문에 IT분야 등의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기 전체를 이끌어 가기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게 되었고 그 일환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차세대 성장 동력이자 국가의 중요 전략인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은 공적기관이 담당하여 민간기업을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투자공사도 설립되었습니다만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정상 자산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 등 구조조정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면 한국투자공사와 함께 해외 투자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동북아 금융허브 구축에 더욱 효율적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 정리 및 기업 구조조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경험 있는 한국의 정부투자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 등을 위해 해외 부실채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서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해외 투자를 허용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재경위에서는 재경부 등 관련 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거쳐 투자 위험에 대한 안전 장치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펀드를 통한 투자규모는 전체 투자금액의 10%를 실링(Ceiling)으로 설정하고 특수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함으로써 투자 위험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완전히 단절하는 안전 장치를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유동화, 제3의 원매자 확보 등 Structure

Deal을 추진하고 투자자산 보유에 따른 우발 위험에 대비하여 투자자산가치하락보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위한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 총액을 자기 자본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하여 과도한 투자를 방지하고, 개별회사에 대한 투자한도도 투자 대상 회사 지분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단독투자가 아닌 공동투자를 유도하도록 필요한 장치를 마련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경영관리위원회를 재경부 차관보, 금감원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위한 국외 부실자산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이들이 참여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 부실자산의 인수 및 정리 업무를 위한 국외 부실자산 인수 시 동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 투자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매년 또는 구체적인 투자 및 출자 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관련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본 의원이 이를 소개하였고 우리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청원 취지에 공감하여 위원회안으로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개별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으나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서는 제척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기에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징계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회계의 감시자 및 기업 경영의 올바른 조언자로서 공인회계사의 역할을 고려할 때 실력 있는 공인회계사의 양성과 조직화된 회계법인의 육성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회계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하여 등록 취소 또는 업무 정지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건전한 회계법인이라도 법적 안정성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회계법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법 제48조제4항은 공인회계사 개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3년의 제척기간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회계법인의 경우에 제척기간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은 입법적 미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와 유사한 전문 직업군에 속하는 변호사, 법무사나 공인노무사의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무사합동법인, 노무법인에 대한 징계조치에 대하여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에 관한 제척기간이 준용되고 있는 반면 유독 회계법인의 경우에만 제척기간을 두지 않는 것은 전문자격사 간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법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과 김정부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키로 하고 각각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상 순이익금의 100분의 4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잔여 이익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되 이사회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이익금은 출자자에게 배당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셋째, 배당은 현금 또는 현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현물 배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

3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

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38. **國稅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강혜숙·고진화·김덕규·김명자·김부겸·김양수·김영춘·김재경·김진표·김태홍·김한길·서갑원·서재관·서혜석·안병엽·안상수·엄호성·윤호중·이계안·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인기·이해봉·장경수 의원 발의)(계속)

39. **租稅特例制限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0. **所得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1. **相續稅및贈與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2. **特別消費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3. **交通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4. **敎育稅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계속)

45. **信託業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길 의원 대표발의)(송영길·이상민·엄호성·윤호중·우제창·조정식·김교흥·김태년·강길부·이호웅·오제세·김현미·정성호 의원 발의)(계속)

46. **金融機關不實資産등의효율적처리및韓國資産管理公社의設立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계안 의원 대표발의)(이계안·박영선·김현미·이근식·염동연·김기석·전병헌·이목희·조일현·송영길·이상경·문학진·김영춘 의원 발의)(계속)

47. **公認會計士法 일부개정법률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8. **韓國産業銀行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재정경제위원장 제출)(계속)

49. **先物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5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51. **證券去來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신학용·박재완·서갑원·오영식·이상민·이호웅·김부겸·이근식·선병렬·제종길·이시종·엄호성·이명규·서혜석·박찬석·이목희·노영민·이화영·원혜영·주승용·장경수·이혜훈·신국환 의원 발의)(계속)

(20시31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1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세 가지 사항만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법에 관한 사항은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과 5쪽에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을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금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 하더라도 2005년 7월 1일에 공포·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통세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세법도 시행일에 관한 사항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회의 일정과 정부 이송을 감안하면 7월 1일에 공포·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세율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법률 제7011호 교통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05년 7월 1일부터는 경유에 대하여 리터당 365원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서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리터당 362원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이를 개정안에서 반영하기 위해서 인상된 세율인 리터당 365원은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여 주서하였습니다.

세법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서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금융 관련 법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 안 제43조제1항은 한국산업은행이 결산순이익금을 처리하는 방식을 각호로 법정하면서 동항 제1조는 순이익금의 40%를 적립하고 동항 제2호는 순이익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자에게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항 제3호를 살펴보면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순이익금의 배당방법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당할 수 있는 근거를 나타내는 내용으로 안 제4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이익금 처리 방식에 관한 내용이기보다는 동항 제2호의 배당에 따른 배당방식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를 따로 정리해서 조문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과 주서한 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재경위 법안이 너무 많아서 일괄해서 상정했고 의원님들이 각각 앞뒤 나눠서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복잡해서 한꺼번에 상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안이 여러 건이므로 질의하시기가 상당히 불편하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7항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4항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0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1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2항 특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3항 교통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신탁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7항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8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49항 선물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0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1항 증권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오래 됐고 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9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6분 회의중지)

(21시46분 계속개의)

○委員長 崔鉛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53.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고진화·오제세·이상득·안민석·박영선·최인기·양형일·유정복·김재홍·김교홍·강혜숙·박재완·조일현·엄호성·노웅래·노현송·이해봉·문학진·조배숙·안상수·이근식·정병국·최재천·이원영·이혜훈·제종길·김태년·신중식·김한길·유필우·서재관·우제창·윤호중 의원 발의)

5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 의원 대표발의)(전병헌·신중식·정봉주·조일현·김한길·서재관·유선호·이윤성·허태열·정성호·안상수·김태홍·이규택·정병국·황우여·김낙순·김재경·오제세·노현송·이근식 의원 발의)

55.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56.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원장 제출)

57.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58.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사일정 제5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8항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제56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이상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위원장대리 이상경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무위원회 이상경 의원입니다.

우리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안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05년 4월 20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동 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독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특별한 공헌을 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의 활동을 기념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건립, 기념관 자료의 수집 및 독도의용수비대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기념사업회에 임원으로서 11인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사업회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념사업회는 국가보훈처장의 지도 감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05년 3월 4일 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우리 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충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유공자단체가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근거법률의 미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마찰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단체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운영의 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법률안들은 국가유공자에 부여되는 가

산점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이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던 중 동 법률들 또한 동시에 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것입니다.

가점합격자의 수를 채용인원의 30%로 제한하는 개선된 가산점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도를 계속 적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 5·18민주유공자 사이에 그리고 가점을 받는 이들 취업보호대상자와 일반취업자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가산점제도를 규정한 이들 법률 또한 반드시 개정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 개정법률안을 각각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토수호를 위하여 공헌한 독도의용수비대원을 기념하기 위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의 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가산점제도의 시행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및 제58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성적에 만점의 10%를 가점하기 때문에 소수인원 선발 직렬 등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과다 합격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인의 공무담임권도 보장하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유공자 등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손자녀에 대하여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그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관 등에 의한 국민 권익침해의 구제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적 권익구제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구성한 옴부즈만 TF의 논의 결과에 따라,

첫째, 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국가행정옴부즈만으로 개편하고,

둘째, 국가행정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옴부즈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결과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행정기관 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감사기구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상에서 말씀드

린 법률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전문위원입니다.

여섯 개 안건 중 두 개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의 주서한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서, 이 법률안의 제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나 전쟁기념사업회법과 같이 거의 동일한 체계와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원과 그 유족 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을 받고 있고, 다만 제정법안 제21조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이 법 제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는 기념사업회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과 그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동 법률안의 전체적인 내용은 기념사업회의 설립·정관·사업·임원·이사회·사무처 등에 대한 규정이고 부수적으로 안 제21조의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안의 제명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 5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제4항에서는 국가행정옴부즈만과 시민옴부즈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른 옴부즈만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동일한 민원에 대하여 중복하여 처리가 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의 결정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동일한 고충민원을 접수한 옴부즈만은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어요.

잠깐, 하나 확인합시다.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요?

○전문위원 박기준 예.

○委員長 崔鉛熙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기준 대부분 기념사업회……

○委員長 崔鉛熙 대부분은 그런데 그 외의 사항은 없느냐 그 말입니다.

○전문위원 박기준 그 사항 중에 한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독도의용수비대 대원과 유족 등에 대해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6조제1항제6호 그 한 항만 들어가 있어서 그게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주된 내용은 기념사업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張倫碩 委員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법률이라고 했는데 법안에서도 옴부즈만, 옴부즈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서 옴부즈만이 뭐라는 정의 규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옴부즈만 설치 법안이라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잘 알아 먹겠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심지어는 검찰의 많은 청에서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인 홍보와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張倫碩 委員 국민한테 이 제도를 제시하는데 지금 설명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한 입법 같아요.

전문가들은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국민들이 이해를 하시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고충처리 기능에

다가 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 이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친근한 용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 그래도 어렵다면 그때 가서 저희 위원회에서 더 연구해서 적합한 용어를……

○張倫碩 委員 대학교육을 정상적으로 받은 분들 중에서 옴부즈만 용어를 이해하고 대학 졸업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옴부즈만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이해하는 용어나 개념은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전문분야에서 통용되는 개념이기는 한데, 이것은 그야말로 백성들이 이해하고 이용해야 되는, 정말 서민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옴부즈만이 창설되었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이 제도가 활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은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은영 위원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옴부즈만의 용어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면서 이 용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조사관, 감사관 등등을 종합한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적당한 용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옴부즈만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옴부즈만의 업무로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고충 민원과 관련된 권고 및 의견표명, 실태 조사 및 평가, 이런 것도 있는데 제6호에 보면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온라인'이라는 말도 굳이 한국말을 찾으려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요즈음 쓰고 있는 말의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옴부즈만과 관련된 법안이 3개가 제출되어 있었는데 그 3개의 법안이 다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적당한 한국말을 찾다가 옴부즈만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명칭의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온라인', '포털' 이런 것도 어쩔 수 없이 외래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양해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 아까 최연희 위원장님께서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법으로 이름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 질의드렸습니다마는 저도 만약에 이렇게 바꿨을 경우에 이 법을 처음 제정한 취지가,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든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듯한 법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지원에 관한 법이라든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지원에 관한 법안,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체해 있는 행위보다는 계속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어떤 역동성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전문위원님 뜻은 어떠십니까?

○전문위원 박기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하고 전쟁기념사업회법, 유사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과 비교해 보면 목적이라든가 일정에 관련한 몇 개의 조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비슷한 체제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독도수비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가 법명에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냥 '기념사업회법' 이렇게 함으로써 모양은 갖추었다 하더라도 마치 지원이 계속되지 아니하고 제한된 재원 내에서 기념사업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박기준 계속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의미에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천 위원 원안대로 가십시다.

○張倫碩 委員 특별법은 좀 이상해……

○委員長 崔鉛熙 본 위원장 생각도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하면 무엇인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법률……

○張倫碩 委員 특별법만 빼면 돼요.

○委員長 崔鉛熙 '법률' 하면 안 되나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어때요? 동의하시겠습니까?

○정무위원장대리 이상경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법률'로……

○委員長 崔鉛熙 아니,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최재천 위원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더 매끄럽지 않습니까?

○이은영 위원 짧게 하지요?

○委員長 崔鉛熙 참전유공자지원법이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들을 '참전군인등지원법' 하다가 '참전유공자지원법' 했는데, 그런 것이 더 독도의 용수비대를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안 되겠나……

이상경 의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정무위원장대리 이상경 동의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그 사이에 정말 국민들의 고충을 많이 처리해 주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미 다 알려져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설치 근거가 되어 있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게 법률로서 규정돼 있던 일종의 규칙이지요? 그렇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예.

○委員長 崔鉛熙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던 설치 근거를 법률상의 설치 근거로 만들어 주려는 것이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런데 이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옴부즈만', '옴부즈만' 해 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외에 별개로 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과거에는 저희가 국민의 고충 해소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11년의 역사를 가지고 국민의 고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기능을 강화하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데에 우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기본은 그것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 고충도 처리해 주고 제도상, 법률상 문제 있는 것을 건의도 하고 안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해 오긴 했습니다마는……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꼭 외래어를 써 가지고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이지요.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아까 이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委員長 崔鉛熙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하면 안 됩니까? '설치법' 하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은영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은영 위원 제 생각으로는 담당 부처에서 옴부즈만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고충처리위원회는 국민들이 자신에게 고충이 있다고 생각해서 민원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 그 케이스를 해결해 주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고요,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이라든가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 실태조사 및 협력지원 교육 등 국민들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및 문제 해결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충처리라는 명칭을 그만 버리고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옴부즈만을 번역할 때 '민원조사관' 하면 조사 기능만을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법률에 이미 조사관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오용될 여지가 있고요, '조사 및 감독 정책관'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갖는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를 부득이 사용한 것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이은영 위원님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까지 국민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한 고충을 처리해 주었고, 국민의 고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법률상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국민의 고충입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느 위원회든 자기들이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법률과 제도를 개선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그것은 국가기관이 아니지요.

명칭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명칭을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으로 하는 데 이상경 의원님 동의하시지요?

○정무위원장대리 이상경 예.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54항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7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영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崔鉛熙 예.

○이은영 위원 소위에 가서 더 논의해도 좋겠지만 일단 제가 하나만 제안해 보겠습니다. '고충민원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하면 안 되겠습니까?

○委員長 崔鉛熙 옴부즈만에 고충이 다 포함되니까 거기 가서 의논하세요. 이것 금방 할 수 있잖아요?

○이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58항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명칭을 한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 좀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최재천 위원 시한을 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崔鉛熙 어차피 빨리 해야지요. 법률상, 내용상 문제가 없고 명칭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내일이라도 해서…… 어차피 7월 초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빠르면 모레도 한 번 할 수 있을까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요?

○우윤근 위원 모레 오전에 소위원회를 잠깐 여는 것으로……

○委員長 崔鉛熙 그것은 간사끼리 의논하세요.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용상 문제 없는 겁니다. 명칭만 우선, 명칭에 관해서 한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검토해 보시라는 취지입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59.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강혜숙·구논회·김명자·김성곤·김재경·김재홍·문학진·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신기남·신중식·심재덕·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인태·유필우·이계경·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전병헌·정청래·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60.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노현송 의원 대표발의)(노현송·강창일·구논회·김낙순·김명자·김재경·김재홍·김태홍·박기춘·박상돈·박재완·서재관·송영길·신국환·신기남·심재덕·안병엽·양형일·엄호성·오제세·우원식·우제창·우제항·원혜영·유필우·이계경·이근식·이낙연·이시종·이원영·이윤성·이해봉·조성래·조일현·최규식·홍미영 의원 발의)

61.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62.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이인기·최규식·서재관·제종길·노현송·조성래·원혜영·강창일·안병엽·우제항·우제창·양형일·정의용·심재덕 의원 발의)

63. 大韓消防共濟會法中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2시16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9항~제62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해

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우제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당초 동 법률안들은 대표발의하신 노현송 의원과 박기춘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부득이 공동발의인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 소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 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이 초고층화·지하화·복합화 추세로 건축되고 있어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는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특정 민간단체에서 실시할 경우 영업주에게 수수료 부담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행 규정대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점검 시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경우 소방시설에 대한 자체 설계·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 발주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예방과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둘째,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부여하는 소방안전교육사제도를 도입하여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지역·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등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놓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소방검정공사가 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수수료 징수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고 그 밖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대로 아무쪼록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우제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6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국민 규제 완화를 위하여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조항은 실효성이 없으며 선언적 규정으로서의 일시적 효과밖에 없어 대국

민 규제 완화를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법령에 사용되는 용어 중 문어적이고 까다로운 용어는 법률법령안 심사 기준에 의하여 알기 쉽게 순화하여 사용토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26조제7항에서는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에 참여하는 소방시설관리사에게 성실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자격을 취소·정지시킬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근거 법률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며, 안 제4조제4항의 근거 법률조문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유인물 10쪽에서는 안 제13조제1항에서 불필요한 단서규정을 삭제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1쪽입니다.

안 제57조제1항에서는 안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단순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과잉 제재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를 오인출동하게 한 경우에 한정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로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한정해서 수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5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모두 지치시겠지만……

김성조 위원!

○김성조 위원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정부투자기관 등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만약 민간주택회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김성조 위원 지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러 가지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런데 민간주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민간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민간은 안 되는데 정부투자기관, 예를 들면 주택공사 이런 곳은 된다는 것입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김성조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민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자격증을 갖추었다든지 이런 것을 채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은 적용을 하지 않고 주택공사라든지……

○김성조 위원 그러면 지금은 자격을 취득했고 장비를 보유했단 말입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김성조 위원 아니, 과거에도 이러한 법이 전제됐다면 당연히 인력을 채용하고 장비를 보유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겠지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이것이 전에는 소방법 단일법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 조항이 들어 있었는데 분법을 하면서 입법과정에서 빠뜨렸던 조항을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김성조 위원 분법에 실수로 빠졌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것이 빠지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빠진

겁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그 당시에 착오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 당시 어느 위원회, 그러면 행자위원회에서 착오로 이것을 빠뜨렸다는 말입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행자위에서보다도 정부에서 안을 내면서 빠뜨린 걸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김성조 위원 제가 봐서는 빠뜨린 것이 아니라 당연히 민간주택공급업자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인력과 장비를 보유한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에게 주는 것처럼 자체 설계·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에게 이것을 할 수 없게 하면 당연히 정부투자기관에게도 이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기술인력 보유 시에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할 때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민간주택공급업자인 경우에……

○소방방재청장 권욱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공사지 시·도를 이야기합니까, 사업자 소재지 시·도를 이야기합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유수의 주택공급업체다, 그러면 본사 있는 곳의 시장·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본사 있는 경우랍니다.

○김성조 위원 본사 있는 곳의 시장·군수에게 승인을 받으면 그 시장……

○소방방재청장 권욱 시장·군수가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길이 열려 있고, 거의 대부분 주택공급업체에서는 자체 인력과 자체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게 현실이겠네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그렇습니다.

○김성조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소방기본법에 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방기본법 제17조, 신설조항 제2항에 보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 제1호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의 영유아"……

청장님,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 영유아인지 압니까? 0세부터 6세까지인데, 말도 못 알아듣는 아이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지금 유아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용규 위원 이 교육은 지금 유아원에서 교육하는 게 아니지요? 이 교육은 소방안전교육산가 뭔가가 교육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교육사가 제17조제2항에 의해서 대상자에게 교육을 하는데 0세, 1세, 2세 이하 애들이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동들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지 무슨 아동들, 기어 다니는 아동들에게 무슨 교육을 한다고, 이것 불필요한 규제 아닙니까? 단적인 예로……

○소방방재청장 권욱 그래도 유아원이라든지 일정한……

○최용규 위원 유아교육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유치원의 유아는 만 3세부터 취학 전 아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나마 얘기를 조금 알아듣는 아이인데 그 아이들도 교육 대상으로는 부적합하지요. 그 아이들이 무슨 교육을 받고, 대피 능력이 있고, 위험 대처 능력이 있습니까? 법조문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이것이 그야말로 규제지 규제……

○소방방재청장 권욱 이것은……

○최용규 위원 유치원은 안전책임자가 있지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최용규 위원 어린이집에도 안전책임자가 있고?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최용규 위원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지, 어떻게 영유아, 유아, 이 아이들이 교육 대상이 된다?

○소방방재청장 권욱 교육의무를 학생들한테 부여하는 게 아니고 소방기관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최용규 위원 지금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간단한 교육을 할 수가 있

습니다.

○최용규 위원 청장님, 자기 엄마하고도 옹알이 밖에 못 하는 어린이, 젖 먹는 아기를 무슨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소방방재청장 권욱 여성부에서 저희들한테 가능하다고 강력하게 요청이 왔습니다.

○최용규 위원 이것은 불필요한 규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예요. 영유아보육시설이나 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인명·재산 피해를 막도록 교육시켜야지 0세 이하 아동들이 무슨 교육 대상이고, 입법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이것은 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법 같아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6세까지기는 하지만 교육이 가능한 연령에 한해서 하면 된다고 이렇게 여성부에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최용규 위원 청장님, 여기에 '교육이 가능한 연령에 한해서'라고 법문에 있습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법문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최용규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법이지요.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얘기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그만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최용규 위원님, 지금 소방기본법 교육 대상자 말이지요?

○최용규 위원 예.

○委員長 崔鉛熙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하시네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저도 소방기본법에 관해서 소방방재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9조제2항을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모닥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장지역이나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을 보면 겨울에는 모닥불을 놓는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다 신고를 해야 된다면 거의, 노동자들이라든지 새벽에 나와서 추울 때 함석통 같은 데다가 장작 몇 개 놓고 피우는 이런 것까지 다 신고해야 된다면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신고의무를 부과했다면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 제재는 소방방재청에서 일괄적으로 성안을 해 오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그것 너무 과도하다 이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줄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신고의무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제재가 전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공백이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로 서민들이 추울 때 잠깐 불 놓는 이런 것까지 다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럴 정도라면 차라리 소방기본법에 '모든 국민은 화재를 내면 안 된다'고 하는 한 조항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어느 정도 자율에 맡기고 이래도 될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 새벽에 모닥불 놓는 것을 미리 며칠 전부터 계획해서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른 새벽에 모여서 추우니까 불 좀 놓자 그러는데 그것 신고 안 했다고 그래서 다 이런 식으로 제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오인 출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화재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외국의 입법례도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조항을 두고 화재 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위원 모닥불 신고까지는 조금 과한 듯한데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그것은 입법과정에서, 그래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이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주호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신고의무는 부과하지 말고 모닥불을 놓아서 출동하게 한 그것만 단순히 규정하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텐데, 신고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사실 현실성 없는 것 아닙니까? 이른 새벽에 신고하면 어디에 신고합니까? 전화로 그냥 소방서에 우리 모닥불 놓겠다고 신고하는 겁니까?

○최재천 위원 시·도 조례……

○주호영 위원 물론 조례로 정하겠지만 근거를 남기려면 서면으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서민 근로자들이 보통 이른 새벽에 추워서 모닥불을 놓는데 그런 것까지 다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조례라든지 준칙에다 엄격하게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겨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좋지만 소방방재청이 생긴 것은 국민을 편하게 해 주라고 한 것이지, 인력공급 시장이나 시장 바닥에 새벽에 나간 분들은 드럼통 놓고 거기다 파지라든가 장작 같은 것, 다 폐기된 것, 불 놓고 거기서 불 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고의무를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모닥불을……

○委員長 崔鉛熙 먼저 오는 사람이 불 피우고 있는데 누가 신고의무자입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불을……

○委員長 崔鉛熙 조례를 지정하는 것은 지침을 주고 조례를 지정해야지 지침도 없이 지방마다 다 다르게 정하면 됩니까?

○소방방재청장 권욱 모닥불을 놓는 자가……

○委員長 崔鉛熙 그러면 사람이 매일 달라지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委員長 崔鉛熙 오늘은 A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불을 피웠다, 내일은 C라는 사람이 와서 불 피웠다, 그러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매일 신고 해야 되네, 그렇지요?

○소방방재청장 권욱 그래서 모닥불이라도 연기가 안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委員長 崔鉛熙 아니, 불 피우는데 연기 안 날 수 있소? 어째 그리 답답……

○소방방재청장 권욱 화재로 오인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한정을 해서……

○委員長 崔鉛熙 우리 권욱 청장은 화재 현장에 안 나가 봤어요, 모닥불 피우는 데? 어떻게 남의 나라 사람처럼 그래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문제점이 있는 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소방방재청장 권욱 예.

○委員長 崔鉛熙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면 납득할 만한 것을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가려고, 그냥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고집만 부리고…… 정부, 어째 그런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62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3항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0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법 집행력과 관련돼서 실효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4. 請願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65. 새마을금고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6.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정부 제출)

67.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정부 제출)

68.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정부 제출)

69. 地方財政法改正法律案(정부 제출)

(22시39분)

○委員長 崔鉛熙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청원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5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68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의사일정 제69항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6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제69항까지 6개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존경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원법개정법률안 등 6개 법률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법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청원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며 벌금액을 조정하는 등 법률의 체계 및 내용을 전반적으로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감사·수사·재판 등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며, 종전에 동·리장이 주소 또는 거소를 증명하는 서류를 청원서에 첨부하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청원서를 전자문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양형기준과 벌금액수를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실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고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업무통제시스템을 강화하며 영업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전문경영인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지역 금고에 1인 이상의 임원상근을 의무화하고 금고이사장의 연임횟수를 종전 2회에서 1회로 축소하며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고 감사에게 상법상의 유지청구권을 부여하고 금고연합회에는 사외이사제, 감사위원회제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기반 확대를 위하여 금고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고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 법인 출자를 허용하는 한편, 경영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해 금고와 연합회가 준수하여야 할 경영건전성 기준을 법제화하고 연합회의 결산·감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치단체의 계약은 대부분 국가계약법을 준용하고 있어 지방계약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재정법을 분법하면서 지방의 특성에 맞는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의 대상 범위와 계약당사자의 선정 절차를 명문화하고 계약내역을 공개하는 등 수의계약 절차를 투명화하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도를 도입하고 긴급한 재해복구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서 확정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계약제도를 도입하며 자치단체에서 체결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계약의 체결 방법, 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의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아울러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특수 관계 사업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목적의 계약 체결을 일부 제한하도록 하여 자치단체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기금은 그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중복기금의 억제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할 경우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를 강화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도록 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은 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한 후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전국 차원에서는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공유재산 및 물품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제고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직접 이용료를 징수하여 당해 재산의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노력으로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가분을 수탁자의 수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당해 시설의 이용 및 관리를 활성화시키고 물품관리에 관한 기준 및 정보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조달청장이 공유하고 상호 협조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능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는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재정법은 국가와 달리 지방예산, 회계, 계약, 공유재산관리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각 분야별로 지방재정의 특성을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분법하여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별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을 지방채 발행 총액한도제로 전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자율발행토록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예산편성의 최소한의 기준만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참여 절차를 마련하고 지방의 재정 상태 및 운영실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며 재정분석진단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석 또는 재정진단 결과에 따라 우수 자치단체에게는 보상을 하고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이행을 권고하거나 지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6개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직이 관여하시는 데가 많군요.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먼저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간부직원”을 “정관에서 정하는 간부직원”으로 간부직원의 범위를 명확히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9조의4제4항에서는 이행명령을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법무부장관이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새마을금고연합회 회장에게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민간에게 이행명령권을 위탁할 수는 없으므로 이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49쪽에서 안 부칙 제5항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및 제2항을 개정하고 있으나 이처럼 부칙에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삭제하고 2005년 6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그 내용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우윤근 위원 질의하시지요.

○우윤근 위원 우윤근 위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청원법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청원법이 61년에 제정됐다가 이번에 개정됩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우윤근 위원 상당히 오랜만에 개정을 하는데 이 수정안 이유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 법안을 제출할 당시에 공무원이 누구든지 청원했다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거나 불이익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규정이 있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윤근 위원 그런데 차별대우 또는 불이익 개념이 불명확하다 해서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형평에 어긋난다, 제10조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청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은 존속시키고 있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윤근 위원 그런데 정당한 청원에 따른 청원인에 대한 차별이나 불이익은 지금 규제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양자 간에 불균형이 있고 또 나아가서는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다소 훼손하지 않는가 하는데, 양자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그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하는 논의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원래……

○우윤근 위원 아마 다른 관련 법안을 검토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부패방지법을 보면 부패행위신고 등을 한 이유로 신고상 불이익이나 또 근무조건에 차별을 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을 혹시 잘 알고 계십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윤근 위원 또 지금 정부 또 의원입법으로도 발의된 부패방지법에 의하면 부패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주는 경우에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정부나 의원입법으로 올라와 있고, 더 나아가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입증책임도 전환해야 된다라는 천정배 동료 의원 입법안도 오늘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런 관련법과의 균형 문제도 있고 또 입법례도……

일본의 입법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원을 한 경우에 청원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는 금지하는 규정은 두고 있고 거꾸로 모해금지 규정이나 이와 관련한 처벌규정은 전혀 두고 있지 않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일본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만 규정을 하고요.

○우윤근 위원 처벌조항은 없지만 차별대우를 금지하는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의무를 규정한 것은 있는데……

○우윤근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모해금지 규정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법안하고는 거꾸로 되어 있지 않나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우윤근 위원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관련법과의 균형을 생각할 때 또 이 법안 자체에 의하더라도 좀 균형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이게 행자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상적이고 불확정 개념으로서 별 실익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에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의해서 시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규정에 의해서 구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우윤근 위원 우선 차별 대비 불이익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것은 다른 관련 법령에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아마 법원에서 일관되게 판정을 하리라고 보입니다. 여기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입법례가 아니고……

하여튼 좋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다음, 주호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주호영 위원 저도 역시 청원법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고 그 자세한 내용은 법에 위임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63년에 제정된 법에 의하면 "청원서의 처리"라고 그래서 청원서가 접수될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까지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오히려 그것을 빼서 도대체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청원법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오히려 희미하게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헌법에 규정된 청원권을 좀더 자세히 하고 구체화하는 법이라면 청원을 접수하면 얼마 내에 회신을 해야 된다든지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처리기간도 있어야 할 테고, 그다음에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청원의 심사"인데 "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청원에 대한 통지내용들을 보면 청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이 일일이 게재되어 있지 않아서 불평을 하는 청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의무를 청원 통지내용에도 부과한다든지 이래서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좀더 자세히 하고 구체화하는 그런 법이어야 할 텐데 도대체 이 청원법에 의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청원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 내에 성실히 처리하고 이런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원법에 있는 "청원서의 처리" 조항에 "……10일 이내에 필요한 보고서 기타의 참고문서를 첨부하여 제1차 상급관서에 제출하야 한다."는 이런 조항조차도 오히려 빼버려서 그 권리의 실체를 더 약하게 하는 개악의 개정안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송받은 것을 10일 내에 처리하고 하는 규정들은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못하는 너무 과도한 규제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주호영 위원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청원을 받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회신을 하여야 한다든지 이런 기간 정도는 적어도 부과하여야…… 낸 국민은 이거 언제 답을 받을지 알 수도 없고 또 청원에 대한 회신을 안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을 법에 있는데 왜 언제까지 안 해 주느냐고 독촉할 수도 없는 이 법이 도대체 무슨 실익을 가지는 것인지, 그냥 헌법에 규정된 청원을 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오히려 청원을 잘못하면 처벌한다는 것만 들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청원에 대한 회신의무를 구체적으로 좀 체현화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관공서에 제출한 민원적인 성격의 어떤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률이 회신기간을 대부분 다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바대로 이 청원이라는 것은 너무도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모든 기관에, 국회도 물론이고 정부에 지금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 청원들의 사항이라는 것이 일반민원과 달리 처리기한이나 이런 것을 획정해서 처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주호영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일응의 기간은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청원에 대한 완전한 회신을 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얼마 한다든지 이런 정도는 두어야 적어도 청원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지 답변할 회신기간조차도 없다면 헌법상에도 보장된 권리인데 너무 미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위원님, 그 처리절차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법에서……

○주호영 위원 아니 청원법 이외에 또 하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자세한 뭐는 대통령령이나 이런 것으로 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위임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데 너무 허술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

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래서 이게 아마 저희들이 다른 나라, 일본 같은 입법례도 연구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의무를 발생시키는 선언적인 규정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구체적인 절차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입법례를 많이 준용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주호영 위원 어떤 입법례는 우리나라가 훨씬 앞서가는 것도 있어요. 그것이 조금 맞지 않다면 우리가 좀더 적절하게 규제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일본만 따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정리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33조에 보면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예시해 놓았는데 우선 문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의원"이라는 말이 제2항 제2호·제4호에 계속 나오는데 뭔가 이상하지요?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로 문언이 좀 이상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33조제1항을 보십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서초구청장은 강남구청장하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계약을 언제든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그렇습니다.

○최용규 위원 장관님, 투명사회협약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공직자윤리법을 손 보고 국회법도 손을 보는 이유는 모든 부분의 부패소지를 다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은 해당 지자체장인 서초구청하고 영리목적 계약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지 않고 부패소지를 정말 없애야지요. 지자체 내지 지방의회와 관련된 부패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는데 아주 형식적인 법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옛날하고 똑같은 법……

지자체 장도 선출직 공직자가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렇지요.

○최용규 위원 그저 자치단체장으로서 말고 개인으로서 영리행위, 영리계약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그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그렇다는 것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고……

○최용규 위원 그러면 이 법 제33조제1항도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委員長 崔鉛熙 최용규 위원님, 이 법안을 입법초안한 국장이 있을 겁니다.

어느 국장이지요? 그때 초안을 예상하고 만들었겠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담당국장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초구청장께서 혹시 자기가 어떤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그럴 때 그 서초구청장은 강남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최용규 위원 제가 예를 든 건 그 구청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상 어떤 경제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계약체결행위가 보장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저희가 제한하는 것은 이를테면 구청장이 계시면 그 당해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 그런 공사를 포함한 그런 계약에 대해서만 참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용규 위원 A지역의 단체장이 B지역 자치단체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업무가 아니고 사적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건데 가능하다고 해석해요?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그 자치단체장의 어떤 자격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용규 위원 딱한 분이데 진짜……

이 문면을 보십시오.

○委員長 崔鉛熙 그것을 읽어 보고 답변하세요.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최용규 위원 선출직 공직자 아닙니까?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예, 그렇습니다.

○최용규 위원 겸직을 전혀 못 해요.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폐업하고 그리고 나서 취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계약을 체결한다고 엉뚱한 답변을 마음대로 해요? 그 답변에 책임질 수 있어요?

○委員長 崔鉛熙 잠깐, 들어 보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최용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요지는 충분히 아셨을 테니까 조금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래 가지고 조정해 보고요.

○최용규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정말로 지금 답변한 대로의 사항이라면 해당 일반조항까지 규제할 필요가 없고…… 이 정부나 우리 사회가 투명사회협약이다 반부패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이하게 법을 만들면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자격요건이 단체장으로서의 자격요건하고 시·구청장의,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표자가 되는 경우하고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너무 쫓기는 시간에 하니까 좀 불편한 것 같은데 최용규 위원, 소위원회에 넘겨 드릴 테니까 양해를 하시지요.

○최용규 위원 예.

○委員長 崔鉛熙 노회찬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노회찬 위원 청원법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정된 지 45년 만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조금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주호영 위원도 좀 비슷하게 지적을 했는데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갖고 국가가 청원사항을 심의할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사항인데도 청원 심사기간, 심사기구, 심사방법 등 청원의 제반 처리절차에 관해서 구체적인 규정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9조에 아주 간략하게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것을 하위법률에 위임한다고 했는데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도 청원에 관련된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 등에는 이러한 하위법률 차원에서의 청원심사에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을 각각의 단체에 위임하는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청원의 불수리와 관련된 개정안 제5조제1항의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대단히 포괄적이고 내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청구대상기관들에 의해서 악용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불수리와 관련해 가지고는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불수리하는지도 분명하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법과 관련해서 논의를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서덕모 기획관,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말고 들어가세요.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이 국무위원들이나 장차관들은 경험이 많아서 상관없는데 실무자들이 답변하는 경우에는 다 알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는데 좀 준비를 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당장 와서 설명한다면 피차간에 금방 납득이 되겠어요? 왜들 그래요? 기회를 한번 준다는 의미는 소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지방행정본부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서덕모 기획관, 당장 처리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가서 준비를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안, 의사일정 제68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5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9항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받아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

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4항 청원법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6항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0. **道路交通法中改正法律案**(최재성 의원 대표발의)(최재성・백원우・이원영・이용희・임종석・지병문・유기홍・구논회・장향숙・박기춘・우제항 의원 발의)

71. **請願警察法 一部改正法律案**(강창일 의원 대표발의)(강창일・강봉균・김우남・김재경・김재윤・김재홍・김종률・김태홍・김혁규・김희정・노현송・박계동・박세환・신중식・양형일・유정복・이계안・이호웅・최인기・최철국・허천 의원 발의)

72.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규식 의원 대표발의)(최규식・염동연・정봉주・최성・이상경・김재홍・정성호・민병두・박기춘・조성래・양형일・이영순・강기정・이상열・우원식・장복심・이인영・이근식・윤원호・지병문・노현송・김태홍・이원영・우윤근・안민석・최순영・김동철 의원 발의)

73. **賞勳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5. **地方交付稅法 일부개정법률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76. **政府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자치위원장 제출)

(23시10분)

○委員長 崔鉛熙 의사일정 제70항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1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2항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3항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4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 의사일정 제75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7건의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0항, 제74항~제76항,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우제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당초 동 법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재성 의원께서 제안설명하게 되어 있었으나 부득이 공동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5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고 실시되는 공사의 경우에 해당 도로의 교통 소통 및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해 주기 이전에 해당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로점용 공사의 경우에 시행 이전 허가단계에서 경찰서장과의 협의 조항을 두어 사전에 도로 소통 및 안전문제에 대해 검토・보완조치를 하게 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도로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 소통 및 안전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도로 현장 상황에 가장 현장감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경찰 차원에서 시행 중인 도로 점용 공사에 대해 공사 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도로점용 공사로 발생되는 교통 정체의 해소 및 안전에 관련된 사전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에 이와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단 도로 공사의 관리는 도로관리청의 업무로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경찰서장이 공사 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도로관리청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그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최재성 의원께서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법률안을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고경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봉사활동 진흥기본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두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국가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자원봉사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이 건전한 시민운동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며,

둘째,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자원봉사단체와 센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며,

셋째, 자원봉사활동의 개발 연계 협력 등을 위한 인프라로서 자원봉사센터와 봉사단체 간 협력과 정보네트워크를 위한 협의체로서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넷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는 원칙적으로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되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4년 12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지방재정법 개정법률안 제57조에서 지방교부세법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보통교부세 감액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부적절하므로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및 지도사항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이 현저하게 부실화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당해 자치단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책임성 및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강재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계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맹형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자원부에 차관급인 에너지자원본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난 3월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즉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고 통계청 및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고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정안, 이상 4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복수차관제의 도입과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

졌으나 여야 간에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합의대로 이를 4월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하여 심사했으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6월 임시국회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여야 간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다시 상정하여 심사를 계속하였으나 방위사업청의 신설과 건설교통부의 명칭을 국토교통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있어 이번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으며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재정경제부 등 4개 부에 복수차관제의 도입을 놓고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는 종전에 2개 부처가 통합되어 1개 부로 운영됨으로써 업무량의 과다로 단수차관으로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대다수 선진국도 복수차관을 두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고위직 증설에 대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국가통계의 품질을 높이고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통계청 및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재정경제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로부터 복수차관 도입과 통계청 및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의 제시가 있었으며 관련 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도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참작하여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고생하셨어요.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발의자를 대표해서 강창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최연희 법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중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공무원 채용에 준하는 시험을 통해 임용되며 그 업무 내용이 제한적인 범위이기는 하지만 경찰의 업무와 유사하며 임용 보수 연금 등 복무규정이 공무원과 같고 처벌규정에서도 공무원 신분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73년 법률 제2666호로 전면 개정된 이후 시행령을 통해 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있어 그 신분을 공무원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공무원신분보장 관련 조항은 삭제하고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에 관한 사항만을 개정키로 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처우개선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은 경찰공무원에 준하도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하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2항 및 제73항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를 대표해서 최규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존경하는 최연희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장시간 노고가 크십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규식 의원입니다.

먼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신변 보호와 시설 경비를 수행하는 일부 경비업체의 경비원이 집단민원 현장에서 주민들과 충돌, 많은 주민들이 부상하여 사회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올해 4월 16일 오산 세교지구에서는 경비업체의 불법행위로 경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지금도 전국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경비업체의 경비원들이 폭력 등의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폭력을 당해도 이를 규제할 법률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어떤 경비원이 배치되어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누가 이들에게 폭력을 지시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 불법행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행위를 사주한 일부 경비업자들은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회사를 재개업하기 때문에 폭력이 다시 저질러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비업자에게 가해지는 행정처벌만으로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고유업무인 경비 외의 업무에 종사하여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을 하거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시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변 보호와 시설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할 시에는 24시간 전까지 신고토록 하여 일부 경비원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도주해도 신원 확인이 어려운 허점을 막고 사전 신고의무를 위반할 시에는 경찰이 배치 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의 감독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은 본 의원의 발의 후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로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아무쪼록 본 법안이 통과되어 집단민원 현장에서 용역깡패가 동원되는 등의 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법사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박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훈법중개정법률안과 최규식 의원 및 노현송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3건의 법안을 통합·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상훈법은 훈장을 치탈하는 절차조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어 서훈을 추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서훈 취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국무회의 상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서훈 취소사유 발생에 따른 국무회의 상정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의무화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훈 취소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서훈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상당한 기간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 취소 의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서훈 취소절차를 명확히 하였고, 둘째 현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서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으나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지 않고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법·관세법 및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崔鉛熙 최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사위에 처음 오셨지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예, 처음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한꺼번에 3건씩 하시네요.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현 먼저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10쪽에서 시행일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부칙 제1항에서는 이 법률안의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4월 국회에서 전부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시행일은 2006년 6월 1일이므로 시행상에 문제가 없도록 이 법률안의 시행일을 이에 맞추어 조정하였습니

다.

법률안 11쪽에서는 개정 대상 법률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개정된 법률이 아니라 개정되기 전—현재 시행 중입니다—법률을 개정하는 안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만약 이 법률안대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전부개정된 법률이 시행(2006년 6월 1일)되기 전까지만 유효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그 효력이 소멸해 버리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법률안이 개정하는 대상을 지난 4월 국회에서 전부개정된 법률로 변경하여 이 개정 사항이 그 법률에 통합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안 11쪽, 조문을 입법례에 따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7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명예퇴직 및 휴직은 경찰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3조, 제74조의2의 규정을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도 준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유인물 11쪽, 12쪽입니다.

안 제15조의2에서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처벌규정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2조제1호 각목에서는 경비업무를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열거하고 있으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바가 없어 경비업무 외의 업무가 매우 포괄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생각건대 이 개정조문의 입법취지는 경비원이 그 업무에서 벗어나 경비원이 직접 건물 철거를 시도하거나 노점상의 강제철거, 노사분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쟁의행위 방해나 집회 해산 등 특정한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정확하게 반영하면서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의 대강을 법률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경비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이 법에서 일부 예시하는 등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수정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제가 경찰청이나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님들로부터 의견을 듣고 처리했어야 되는데요,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어디에서 협조를 안 했어요?

○전문위원 김대현 저희들이 수정안을 만들려면 수정의견을 작성할 때 행정기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하게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됐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소관 부처가 행정자치부하고 또 어디예요?

○전문위원 김대현 경찰청입니다.

○委員長 崔鉛熙 알았어요.

○전문위원 김대현 다음은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입니다.

법률안 6쪽에서 항 간의 반복적이고 불분명한 조문을 간결하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고요.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안(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포상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유인물 12쪽입니다.

불필요한 벌칙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경미한 자구수정이 있었고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서는 체계·자구상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委員長 崔鉛熙 수고하셨어요.

지금 문제 제기한 게, 수정안 정리와 관련해 부처의 협조가 없어서 제대로 되지 못했다는 것이 경비업법이지요?

○전문위원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다음은 대체토론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영 위원 질의하시지요.

○이원영 위원 최규식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비업법과 관련되어서 경비원의 경비 외 업무를 금지하고 그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비업무 외의 행위를 한 경비원을 처벌하고, 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킨 이런 사람을 처벌하는 취지에 있지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예, 그렇습니다.

○이원영 위원 그런데 경비업무 외의 행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예시는 많은 부분, 경비업무 외에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을 여백으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있든 없든 경비업무 외의 행위를 여기서 금지시키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명시하는지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그 취지대로라면 경비업무 외의 행위라고 해서 규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지금 경비업무 외에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일들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수색, 그다음에 출입 저지에서부터 시작해서 폭력을 수반해서 끌어내기, 그다음에 노점상 철거, 빚 받아내기에 이르기까지 경비용역업체의 경비원들이 현실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업무 외의 행위라는 게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고 만일에 이것을, 또 설령 몇 가지 열거한다면 그 행위 이외의 행위는 오히려 빠져 나가기가 쉬운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협조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경찰에 대해서 열거하려면 어떤 것을 열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본 경찰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열거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지금 현재의 규정대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그런데 처벌을 하는 조항에 있어서 가령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맞는데 구체적으로 처벌할 행위를 특정해서 처벌하고 나머지는 묵인해 주자,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금지시키는 취지가 없어지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그러니까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게 한 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두자, 그런 말씀입니까?

○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면 처벌을 받는데, 그렇다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게 돼서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가령, 크게 폐를 주지 않는 경비업무 외의 이런 업무도 처벌받고 하니까 대표적으로 좀 문제되는 행위를 예시해서 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그 열거된 행위 외에, 그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인데도 처벌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그러니까 입법정책의 문제인데 처벌이라는 것을 너무 다 처벌하기가, 다 처벌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아주 폐가 되는 대표적인 유형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뭐뭐 등' 해서 하자는 말씀인가요?

○이원영 위원 예.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저는 오히려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 때문에, 자꾸 제가 주장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이원영 위원 처벌이라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라 그 행위 유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경비업무 외의 업무'라고 한다면 너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고 어디가 포섭되는 건지도 몰라서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는 그런 분을, 폐해를 예상해서 대표적인 행위만 처벌한다면 취지가 부각되느냐 이거지요.

어떻습니까? 취지로 봐서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는 일체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취지이시지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예.

○이원영 위원 좋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양승조 위원님!

○양승조 위원 저도 최규식 의원님한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하는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신고하는데 그 신고사항에 신변보호 업무를 받는 사람의 인적사항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예.

○양승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변보호 업무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을 유지하고, 또 이런 모든 것을 신고해야 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침해할 우려가 아주 큰데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지금 이번에 제가 개정한 내용에는 그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승조 위원 지금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호에 있거든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이 부분은 제가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아닙니다.

○양승조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규식 예.

○양승조 위원 그러면 경찰청장님, 어떻습니까?

○경찰청장 허준영 그것은 피경비원에 대한 신고 내용은 안 나옵니다.

○양승조 위원 신변보호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다고요?

○경찰청장 허준영 예, 그렇습니다.

○양승조 위원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조 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성조 위원 김성조 위원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중에서 여러 가지 안, 특히 복수차관제 도입을 둘러싸고 행자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아니하고 한나라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퇴장하지 않았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표결 처리를 했고요.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다 있는, 참석한 속에서 표결했습니다.

○김성조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 위원들은 그냥,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개진했지만 이러한 한나라당 측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서 결국은 계속해서 합의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표결하자,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렇게 표결에 들어갔고 앉아서 그냥 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일부 위원님께서 반대를 했고 또 표결을 하지 않도록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 합의 결과에 따라서, 국회법 처리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기로 4월 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그 원칙에 따라서 처리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조 위원 사실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전번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관습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을 판정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 물론 행자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이 이러한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시각, 아니 좋지 않은 시각을 넘어 반대하는 의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공직자를 위한, 특히 그것도 고위공직자를 위한 자리를 계속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도 일꾼 위주라기보다는 정치적 배려에 의한 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위인설관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소위에 넘겨서 심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복수차관제의 이러한 뜻이 맞다 하더라도 한번에 4개 자리에 대해서 복수차관을 다 임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는 우선 하나 해 주고 그다음에 조정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차후에 한다든가 이런 논의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사소위에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한 말씀 드리면요, 이것의 심도 있는 논의는 지난 2월부터 4월, 6월까지 세 번의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를 했고 청문회까지 했거든요.

○委員長 崔鉛熙 잠깐요. 심도 있는 논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고, 소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좀더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그것을 좀 정리해서……

장윤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張倫碩 委員 행자부장관님께서 행자위의 표결, 이른바 날치기 표결 처리할 때 그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있었습니다. 날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張倫碩 委員 국무위원께서 국회법 절차와 관련해서 너무 그렇게 단정적으로 발언을 하시면 문제가 있을 텐데요. 어쨌든 국회법 제110조 아시지요? 행자부장관님께서 지금 국회 표결절차가

날치기가 아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됐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니까, 국회법 제110조 아십니까?

○委員長 崔鉛熙 행자부장관이 국회법을 잘 아시겠어요? 국회의원이 답변하세요.

○張倫碩 委員 국회법 절차에 관해서 지금 단정을 하시니까……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아니, 저는……

○張倫碩 委員 제110조 모르시지요?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예, 조문은 모르겠습니다.

○張倫碩 委員 제가 제110조를 읽어 드릴게요.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이것이 과거에 날치기를 했기 때문에 야당에서 제의를 해서 국회법에 반영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 선언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張倫碩 委員 그래서 이 규정은 위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상임위원회에서도 표결할 때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되는데 바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때 유감스럽게도 위원장께서 의장석을 이탈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결절차가 국회법에 위반돼서 무효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에 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안은 여야가 이렇게 국회법 절차, 표결절차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할 정도의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결 원리, 그것 옳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다수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헌법과 같은 국가의 기본법은, 물론 다수결 처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수결 처리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다수결 처리한 예가 3선 개헌, 소위 변칙 처리 아닙니까?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합의처리하는 게 전통이고 또 당연한 과정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국가 안보에 관한 기본법,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입니다. 이런 법률도 단순히 몇 차례 토론하고 합의 안 되었으니 표결 처리하자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 않습니까? 정치관계법,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런 것,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르다고 몇 번 토의하고 공청회하고 '자, 이제 표결 처리합시다' 해서 한쪽 당이 반대하면 '그것 무슨 소리야?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이제 표결 처리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회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정치관계법은 여야 간에 충분히 의논을 해서 합의가 된 것은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처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고 전통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조직법, 이것 때에 따라서는 표결 처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정부가 정부조직에 관해서 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한다면, 더더구나 그 정부조직법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국가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기에 1개 부처도 아니고 4개 부처의 차관을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가져왔으면 여야 간에, 정파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 처리해야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의되지 않은 채로 행자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해서 다른 당에서는 국회법 제110조를 위반한 날치기 처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안은 오랜 국회의 전통과 역사를 상기하면서 합의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우제항 의원님께서 행자위에 계셨으니까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위원장님, 제가 행자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崔鉛熙 답변하세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지금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이나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 여야가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 내는 데 큰 취지가 있다는 데 동감을 합니다.

다만 많은 토론과 연구검토를 한 결과 계속 안 되고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우리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하는 것도 합법적인 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회법 제110조를 위반한 날치기 처리가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 위원장석을 이탈하셨으니까 이것은 날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사실행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라든가 다른 위원들한테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분명히 제가 현장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고, 다만 충분한 토론을 거치는 등 여러 가지 대체토론을 거쳐서 장시간 했는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처리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하고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조직법이니까 저희가 2월에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했고 4월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자부 의견만 들은 것이 아니고 각 부처의 차관, 관계되는 사람한테 실정을 전부 들어서 과연 그 부처의 실정은 어떤가, 일례를 들면 외교통상부 산자부 같은 데는 차관 결재받는 데 48시간이 걸린답니다.

현재도 당사자 간의 회의만이 아니라 다사자 간의 회의 때도 참석하게 되면 우리 쪽에서 국장이 나가는 이런 문제, 또 산자부 예를 들면 석유를 언제 도입하느냐 시기를 판정하는 문제, 또 재경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차관에 대해서 충분히 심의를 하고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도 또 소위원장 명예를 걸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월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법은 정부법안이니까 우리 충분히 토론할 대로 다 토론했다, 그러나 각 당에서 주장한 바가 다르기 때문에 더 논의하자 이래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6월에 가서는 합의처리든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도 하겠다고 약속한 그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4월에 합의한 복수차관제만 이번에 통과시켰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날치기 처리라든가 퇴장한 가운데 한 것은 없었고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한 분만 먼저 나가셨고 나머지 분은 의사진행 방해는 있었어도 날치기 처리가 아님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崔鉛熙 결론적으로 표결해서 처리했다는 것이지요?

열린우리당은 다 표결에 참여했고 한나라당 쪽에서는 표결에 참여 안 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표결에 참여하셨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러니까 기권이라는 얘기입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리고 그중에……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한 분 나가셨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행정자치위원회 구성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이 두 당만 되어 있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민주노동당하고 무소속 한 분 있습니다.

○委員長 崔鉛熙 그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셨습니까?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참여했습니다.

○張倫碩 委員 존경하는 우 의원님, 우 의원께서는 국회법 제110조 의장석을 이탈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소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의장석을 이탈한 상태에서 사회를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아닙니다.

○張倫碩 委員 그러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실황이 녹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한번 검증을 하면 그 상황은 우리가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검증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요……

○張倫碩 委員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우제항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張倫碩 委員 방금 우 의원께서 녹화도 되어 있을 테니까 보면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녹화된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지요.

○委員長 崔鉛熙 그것은 두 분 간에 의논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됐습니다.

다음, 최재천 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재천 위원 국회법에 대해서 존경하는 장윤석 위원님께서 개인 의견을 마치 지나친 유권해석처럼 말씀하시는데 왜 제110조는 이야기하면서 제109조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 제86조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체계와 자구심사를 떠나서 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까지 도맡아서 하는 것처럼 무리를 하십니까? 이래서 법사위를 없애자

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권한을 남용하니까…… 법사위가 무슨 의사절차의 적법성을 따집니까?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 있던 사람보다 현장에 없던 분이 정확히 더 잘 압니까? 그걸 그렇게 강조합니까? 그리고 교묘하게 이른바 날치기라고 비판하십니까?

날치기도 굳이 따지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깔아뭉개는 게 날치기입니다. 해야 되는 법을 안 해 주는 것, 부작위에 의한 날치기에요.

위원장이 합법적으로 국회법 정신에 따라서 위원장석에서 표결을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의사와 일치되지 않는다고 날치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사위는 체계와 자구심사만 해야지, 이것은 정책사안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차관들이 보통 4명에서 6명이에요.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지요. 일을 할 수 있게 한 다음에 일을 잘못했을 때 비판을 해야지요.

저는 우리 법사위가 좀더 겸손하게 국회법상 정해진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헌법과 국회법에 충실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칩니다.

○委員長 崔鉛熙 두 분 다 옳으신 말씀을 하십니다.

국회법 정신은 합의처리가 정신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국회법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표결처리해야 되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한꺼번에 많이 보내 주신 바람에 고맙게도 오늘 법사위 회의가 많이 지연됩니다.

지금 자정이 가까웠습니다.

차수 변경을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4시 산회)

○出席委員(14人)

김성조	김재경	노회찬	문병호
양승조	우윤근	이원영	이은영
장윤석	정성호	주호영	최연희
최용규	최재천		

○委員아닌出席議員(16人)

강창일	김종률	김형주	박재완
신중식	안명옥	안영근	우상호
우제항	이계안	이상경	이상민
조일현	진수희	최규식	한병도

○出席專門委員

수석전문위원	김종두
전문위원	김대현
전문위원	박기준

○政府側參席者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진표
국방부장관	윤광웅
행정자치부	
장관	오영교
지방행정본부 지방재정기획관	서덕모
문화관광부장관	정동채
농림부	
장관	박홍수
농업구조정책국장	장태평
농촌정책국장	서병훈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원전사업기획단장	조석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
법무부차관	김상희
여성가족부차관	신현택
건설교통부차관	김용덕
경찰청장	허준영
해양경찰청장	이승재
소방방재청장	권욱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	김성호

○憲法裁判所側參席者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이범주

○其他參席者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박기수

【報告事項】

○議案回附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이은영 의원 대표발의)

(2005. 6. 22 이은영·김혁규·문학진·민병두·선병렬·양승조·우윤근·유인태·이기우·이원영·이호웅·장복심·장영달·정성호·조성래·주승용·최성·한명숙 의원 발의)

6월 24일 회부됨

刑事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홍미영 의원 대표발의)

(2005. 6. 24 홍미영·임종석·김낙순·이계진·우원식·장향숙·한광원·강창일·윤원호·유재건·김덕규·서재관·김태홍·유승희·이계경·박기춘·최인기·신학용·이정일·이인영·이상경·김동철·노현송·문학진·우상호·최재성·정봉주·김교흥·이광철·최규식·김재윤·이호웅·이기우·김성곤·김종률·이재오·류근찬·김광원·김양수·신중식·박계동·정병국·조정식·박성범·홍문표·이경숙·심재덕·김낙성·노영민·김원웅·우제창·우제항·정청래·선병렬·김춘진·황진하·조경태·김희선·임종인·주승용·김영춘·김선미·안민석·박상돈·정문헌·이낙연·최철국·김영주·김영숙·이해봉·안영근·이성권·장복심·정화원·윤호중·유필우·유기홍·김명자·노웅래·한명숙·김태년·정의화·김정훈·강기정·이재웅·김현미·김효석 의원 발의)

6월 27일 회부됨